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신청 안내서

| 신고 기간 | • 실적서류 제출 : ~ 2026년 2월 19일(목) •재무제표 제출 : 법인 ~ 4월 15일(수) / 개인 ~ 6월 10일(수)

| 접수 방법 | 온라인 입력 후 방문(우편) 접수

| 온라인등록 | www.ekffa.or.kr

| 신청 장소 | 한국소방시설협회 각 시·도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 시공능력 평가 순서도 i
- 실적신고 시 유의사항 ii

I 시공능력 평가 기본사항 1

II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지침 7

III 실적신고 시스템 등록방법 13

※ 자주찾는 메뉴

- 1차신고 15
 - 1. 업체기본 현황 15
 - 2. 실태조사 등록 17
 - 3. 신인도 등록 22
 - 4. 기술평가 등록 27
 - 5. 실적 등록(유형별 입력 방법) 28
- 2차신고 46
 - 1. 재무제표 등록 46
 - 2. 사업통계 조사 52

IV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연계자료 확인 57

V 시공능력 평가 방법 61

- 발주자별 부호코드(공종세분류 및 해설) 67
- 자주하는 질문(Q&A) 84

시공능력 평가 순서도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ekffa.or.kr)에 접속하여
- 온라인 실적신고 시스템에서 신고사항 입력
- 신고서류 출력 후 내용확인
(서류 제출 전 누락, 오타 등 확인·수정)

- 실적서류 제출 : 2026. 1. 2.(금) ~ 2026. 2. 19.(목)
- 재무제표 제출 : 법인 - 2026. 4. 15.(수)까지
 개인 - 2026. 6. 10.(수)까지

- 시공능력 평가 실적 등록내역확인 및 산출내역 확인
 : 2026. 7월 중 (※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할 것)
- 시공능력 평가 공시 : 2026. 7. 31.(금)
(열람안내 공지)

- 시공능력 평가액 소방시설업등록수첩 기재
(2026. 7. 31.(금)~, 한국소방시설협회 각 시·도회)

실적신고 시 유의사항

- 1** 실적신고는 협회의 「**온라인 실적신고**」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합니다.
- 2** 실적신고 서류의 법정제출기한은 **2026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은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자 우편소인이 날인된 우편까지 인정**됩니다.
- 3**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시공능력 평가 공시 및 실적, 경영상태 등의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면허 업체도 동일함)
- 4** 평가수수료 및 통상회비는 서류제출 시 함께 납부하며, **시공능력 평가 공시 이후 평가수수료 및 통상회비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5** 제출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자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발주처 등)에 확인 조치할 수 있으며, 보충 서류를 요청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불공정 행위의 공사실적, 소방시설공사업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적발될 시 관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에 통보하게 되오니 허위(과장) 실적신고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7**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이 발생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하여 공시합니다.
- 8**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재무제표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항목이 나타나야 합니다.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신청 안내서

I

시공능력 평가 기본사항

시공능력 평가 기본사항

1 시공능력 평가란?

-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적정한 소방시설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체별 공사실적·경영능력·기술력·대외신인도 등을 수치화하여 공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장려하는 제도로써 매년 1회 평가하여 공시 이후 다음 공시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 시공능력 평가액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적정한 소방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금액으로 봅니다.
-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는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의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소방청고시 제2022-8호(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3 평가대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026년도 시공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반 서류를 제출한 업체[2025-2026년도 신규업체 및 기존 업체(실적이 없는 업체포함)]**

4 실적신고 법정 신고기간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실적서류를 매년 2월 15일까지, 재무제표의 경우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6월 1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열람기간

- 인터넷으로 실적 신고 후, 공시 전까지 항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시공능력 평가액 및 재무제표 주요사항 열람기간은 2026년 7월 중에 별도 문서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열람 안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에서 열람 기간내에 업체별 검토내역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음)

6 시공능력 평가액 공시 및 등록수첩 기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로 통보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능력 평가액 기재에 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7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

- 금 액 : 100,000원
- 납부방법 : 소방공사실적 신고 시 납부

8 회비납부 안내

가. 통상회비

- 최저금액 60만원, 최고금액 3,000만원으로 하되, 천원미만은 절사하고,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도 소방시설공사실적액 × 0.6/1,000
 - 예 1) 실적이 10억 원인 경우 : 10억 원 × 0.6/1,000 = 60만원
 - 예 2) 실적이 100억 원인 경우 : 100억 원 × 0.6/1,000 = 600만원
 - 예 3) 실적이 500억 원인 경우 : 500억 원 × 0.6/1,000 = 3,000만원
 - 예 4) 실적이 700억 원인 경우 : 700억 원 × 0.6/1,000 = 4,200만원이나 최고금액이 3,000만원이므로 이 경우 통상회비는 3,000만원임
 - 예 5) 실적이 5억 원인 경우 : 5억 원 × 0.6/1,000 = 30만원이나 최저금액이 60만원이므로 이 경우 통상회비는 60만원임.

나. 납부방법

- 공사실적신고금액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실적서류 제출 시 관할 시·도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수수료 및 통상회비** **납부금액** 및 **해당 시·도회** **계좌번호** **확인 방법**



-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 업체 영업소재지의 **해당 시·도회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실적신고 시스템 참조)
- **평가수수료 및 통상회비** **납부 영수증 발급 방법**



※ 평가수수료 및 통상회비는 서류제출 시 함께 납부하며, **시공능력 평가 공시 이후 평가수수료 및 통상회비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신청 안내서

II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지침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지침

1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기간 및 접수처

가. 공사실적 관련서류 제출기간 :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

[※ 마감일 이후는 추가접수 및 변경 불가]

나. 재무제표 관련서류 제출기간 : 2026년 1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인사업자 : 6월 10일까지, 성실신고 업체는 7월 10일까지)

- 재무제표(전기/당기 포함,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가 포함된 것)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이 확인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의 적용을 받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다. 실적신고 및 재무제표 접수처 : 협회 각 시·도회

2 실적신고 시 주의사항

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협회에 신고된 실적 자료는 과세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되어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니 실적 신고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에서 제출한 공사실적 서류 및 재무제표 자료는 해당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산정과 향후 소방시설공사 실적확인서 및 경영상태확인서 발급 등에 사용되며,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자료로 제공됩니다.

다. 한번 제출된 공사실적서류 및 재무제표는 제출기간 이후 추가접수가 불가하며,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시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적 신고 시 서류 편철 순서 [스테이플러(호치키스) 사용금지]

순서	제출서류	
기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1]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 신청서 	필수서류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2] 소방시설공사 실적총괄표 • [서식3]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4]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도급계약서 사본(총 도급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민간 공사인 경우) • 세금계산서 사본 <p>☞ 온라인 등록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순서가 맞지 않는 경우 재편철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해당사항 있는 경우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7]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p>※ 2025년 기준(2025. 1. 1. ~ 2025. 12. 31.)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선·해임 신고된 주·보조인력은 2026년 1월 1일자로 자동 업로드 됨</p> <p>☞ 업체에서는 업로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없는 기술자가 보유기술인력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할 시·도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술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로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과태료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p> <p>※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거짓신고 시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p> </div>	필수서류
신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8] 신인도평가신고서 및 증빙서류(ISO인증서, 표창 등[공로패, 감사패X]) • [서식9] 소방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및 세부 내역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의원가명세서 및 전기/당기 포함) • 감사보고서(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필수서류

- ☞ 소방 무실적 업체의 경우 굵은 글씨의 서류를 준비
- ☞ 무실적의 경우 [서식2,3] 실적총괄표 및 실적신고서는 실적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4 실적 신고 시 서류 점검 사항

순서	서류구분	제출	점 검 사 항	제출일자
1	[서식1]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 신청서	1	•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정확한 입력여부 확인 및 인감날인 확인	제출마감 2026년 2월 19일
2	[서식2] 소방시설공사 실적총괄표	1	• 인감날인 여부 확인	
3	[서식3]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서	1	• 공사명, 발주처, 착공·준공일, 공사금액, 시공규모 등의 정 확한 기재 여부 확인 및 인감날인 확인	
4	[서식4]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1	• 발주처, 원도급자 또는 감리자의 증명인 날인 여부 확인 (복합공사의 경우 해당연도 기성액의 공사별 합계금액이 해당 연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도급금액이 1,000만원 이하는 발주처 직인 생략가능	
5	도급계약서 사본	1	• 계약서 사본 및 변경 합의서 확인 ※ 도급금액이 3,000만원 이하 또는 관급 실적증명서 제출시 생략가능	
6	세금계산서 사본	1	• 금액과 날짜가 정확한지, 식별이 가능한지 확인 (도급금액이 1,000만원 이하 공사도 세금계산서는 제출함) ※ 관급 실적증명서(발주처 직인 날인된) 제출시 생략가능	
7	[서식7]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1	• 2025년 기준(2025. 1. 1. ~ 2025. 12. 31.)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선·해임 신고된 주·보조인력은 2026년 1월 1일자로 자동 업로드 됨 ※ 업체에서는 업로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 없는 기술자가 보유기술인력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할 시·도회로 신고 ※ 재직확인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출 불필요	
8	[서식8] 신인도평가신고서 및 증빙서류	1	• 품질경영인증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았는지 확인 •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사본 또는 인정 가능한 서류 첨부	
9	[서식9] 소방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및 증빙서류	1	• 세무대리인의 날인 여부 확인 • 세부 명세서 첨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된 비용 중 실제로 소방시설공사업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기재했는지 확인	
10	재무제표 (전기/당기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 (외감대상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무원가명세서 포함)	1	• 재무제표 부속서류가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무원가 명세서 등) ※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 외감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	

☞ 관급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주의사항 : 사립학교는 교육서비스업(963)으로 분류)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신청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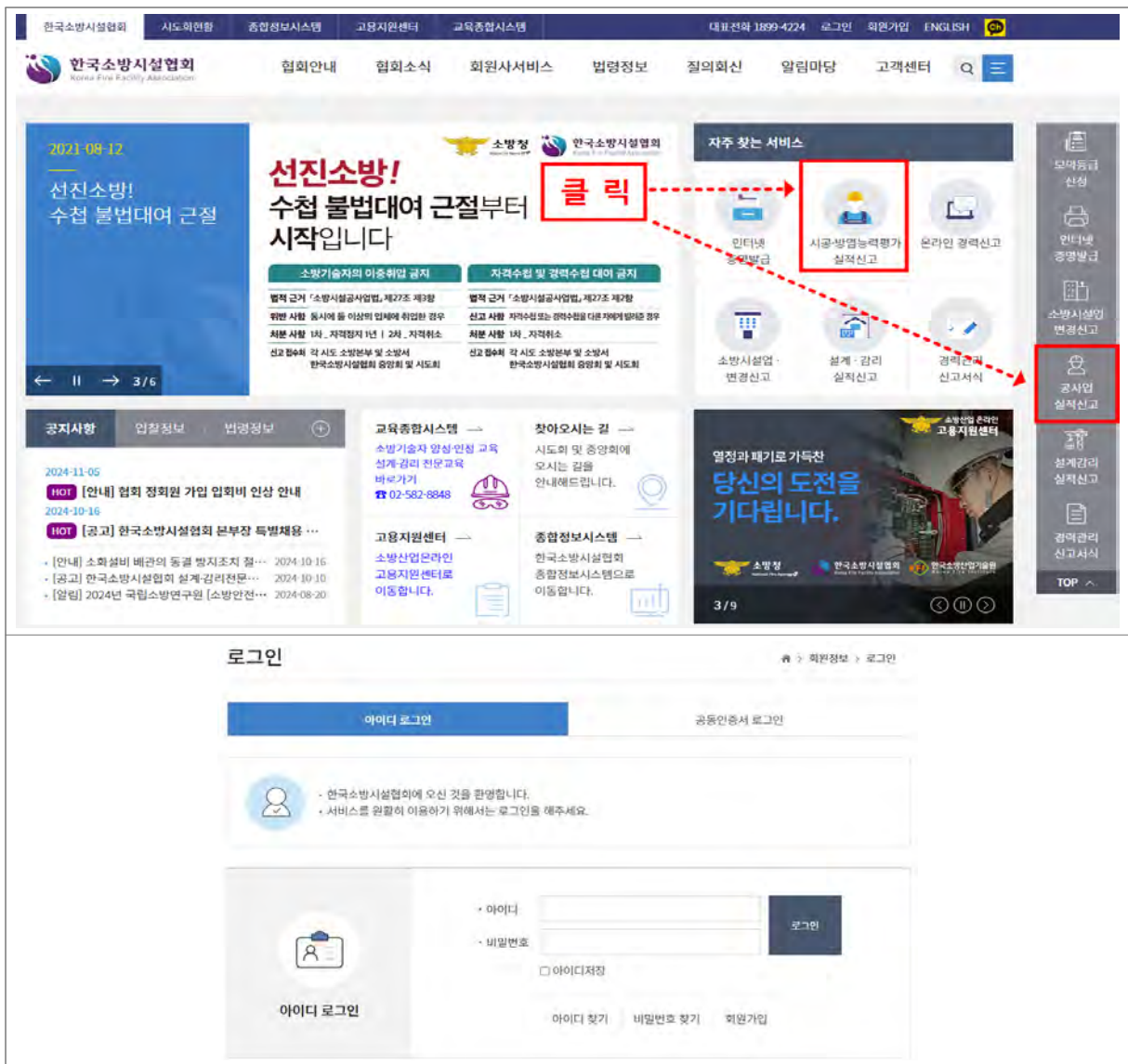
실적신고 시스템 등록방법

실적신고 시스템 등록방법

1차 신고

1. 업체기본 현황

1) 실적신고시스템 창 열기 및 사용자 로그인



① 엣지 또는 크롬을 이용하여 한국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https://www.ekffa.or.kr/>) 접속 후 '시공·방염능력 평가 실적신고' 또는 '공사업 실적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공사업 실적신고' 진행

1차 신고

1. 업체기본 현황

2) 업체 기본현황 확인

진행현황

2026년 시공능력평가 진행상태

실적신고	접수번호	0000
	접수일	2026-00-00
재무제표	종류	
	접수일	

메모사항: 메모사항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알림] 2026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2025-10-22
- [알림] 2025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2025-01-07
- [알림] 2024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2023-12-28
- 2023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2022-12-29
- 2022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2021-12-23

업체정보

상호	(주)OO소방	대표자	OOO	사업자번호	000-00-00000
회원구분	정회원	회원번호	00-00-0000	회원가입일	0000-00-00
업종	전문	등록번호	0000-00-00000	면허등록일	0000-00-00
주소	(00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 8길 8			전화번호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① '공사업 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생성되는 팝업창입니다.
- ② 현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기본 현황, 공지사항, 시공능력 평가 진행상태, 메모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업체 담당자께서는 해당 업체의 내용을 확인 후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도회로 등록사항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사항 : 상호, 대표자, 주소 등

1차 신고

2. 실태조사 등록

1) 대표자 확인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안내 공사업 방염업 알림마당

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공사업 >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대표자 소방시설업현황 검업증현황 검업타산업 업체담당자

순번	성명(한글)	직위	입사일자	비고
1	0 0 0	대표이사	0000-00-00	

성명(한글) 성명(한자) 생년월일

직위 대표이사 선임대표여부 입사년월일

※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협회 필수 신고사항 입니다. - 홈페이지 인원신청서식 변경사항 신고서 참조

① 업체 대표자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해당 시·도회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신고

2. 실태조사 등록

2) 소방시설업현황 확인

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공사업 >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진행현황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 신인도 등록

· 기술평가 등록

· 실적 등록

2차신고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 안내

신고현황

대표자: 소방시설업현황

검업종현황

검업타산업

업체담당자

순번	업종	분야	등록번호	등록관서	등록일	대표업종여부(소방)
1	공사업	전문	0000-00-00000	00 소방안전본부	0000-00-00	대표업종

※ 대표업종여부(소방)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가운데 업체의 대표업종을 나타내는 사항임
 ※ 업체의 면허등록사항과 다른 경우 해당 시·도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① 업체의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업)에 대한 면허사항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② 등록된 자료가 업체의 면허등록사항과 다른 경우 해당 시·도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업종여부(소방)은 업체에서 보유한 소방시설업종 중 대표업종을 나타내는 사항입니다.

1차 신고

2. 실태조사 등록

3) 겸업종사항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실태조사 등록' (Status Survey Registration) page on the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website.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Navigation:** Includes '안내' (Home), '공사업' (Construction Business), '방염업' (Fireproofing Business), and '알림마당' (Notice Board).
- Sidebar:** Contains '공사업' (Construction Business) and '1차신고' (1st Report) with sub-items like '실태조사 등록' (Status Survey Registration), '신인도 등록' (New Business Registration), '기술평가 등록' (Technical Evaluation Registration), and '실적 등록' (Performance Registration).
- Main Content:**
 - 실태조사 등록:** A section with a breadcrumb trail '공사업 >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 Filters:** Includes '대표자' (Representative), '소방시설업현황' (Fire Facility Status), '겸업종현황' (Concurrent Business Status - highlighted in red), '겸업타산업' (Concurrent Business), and '업체담당자' (Company Contact).
 - Table:** A table with columns: '순번' (No.), '업종명' (Business Name), '등록지역' (Registration Area),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등록관서' (Registration Office), '등록일' (Registration Date), and '대표업종여부' (Representative Business). One entry is shown: '1', '전기공사업'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서울' (Seoul), '제서울-00001호' (Jeoseoul-00001), '서울특별시' (Seoul), '2000-01-01', and '대표업종여부' (checkbox).
 - Form:** Fields for '업종명' (전기공사업), '등록지역' (서울), '등록번호' (제서울-00001호), '등록관서' (서울특별시), '등록일자' (2000-01-01), and '대표업종여부' (checkbox).
 - Buttons:** '추가' (Add), '저장' (Save), and '삭제' (Delete).
 - Footnote:** '* 겸업사항 입력시 대표 업종 체크 (단, 소방시설공사업이 대표업종 시 체크하지 않음)' (When entering concurrent business, check the representative business (except for fire facility construction business)).

- ① 업체가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업) 외 겸업하는 공사업(예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이 있을 경우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겸업하는 업종이 여러 개일 경우에도 모두 입력합니다.
- ② 등록번호와 등록관서, 등록일자는 등록증에 있는 그대로 입력합니다.
- ③ 겸업하는 업종 중 대표업종을 체크합니다. 단, 소방시설업이 대표업종인 경우에는 대표업종 여부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1차 신고

2. 실태조사 등록

4) 겸업타산업 등록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안내 공사업 방염업 알림마당

공사업

실태조사 등록

◆ 공사업 >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대표자 소방시설업현황 겸업종현황 **겸업타산업** 업체담당자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기계장비임대업

건설관련기술서비스업

기타

해당없음 (건설업 외에 타업을 겸업하지 않는 경우)

※ 총매출액에 건설업 이외의 산업활동에 의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산업부문을 체크
겸업 타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부문 모두 체크할 것

저장

- ① 결산사항의 총매출액에 **건설업 이외의 산업활동에 의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산업부문을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 ② 겸업 타산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부문에 모두 체크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매출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체크합니다.
- ③ 겸업 타산업은 건설업 이외의 사업부서를 두는 것과 상관없으며, 건설활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매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차 신고

2. 실태조사 등록

5) 업체담당자 등록 (필수)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안내 공사업 방염업 알림마당

공사업

진행현황

1차신고 -

· 실태조사 등록

· 신인도 등록

· 기술평가 등록

· 실적 등록

2차신고 +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 안내

신고현황 +

실태조사 등록 ■ 공사업 >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대표자	업체임원현황	소방시설업현황	겸업종현황	겸업타산업	업체담당자	
순번	부서명	성명	직위	담당업무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1	총무부	이대환	과장	시공능력평가	02-520-6022	010-0000-

부서명 * 성명(한글) * 전화번호 *

직위 담당업무 등록일자

핸드폰번호 (ex:010-1234-1234) * 협회정보제공 SMS 수신용

E-Mail * 협회정보제공 E-Mail 수신용

- ①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신고 담당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추후 실적신고서류 검토 시 보완 사항 등을 담당자에게 통보할 예정이오니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② 핸드폰 번호의 경우 향후 협회에서 업무 진행에 필요한 SMS(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위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 ③ 담당자는 여러명 등록할 수 있으며, 업체 담당자가 변경되면 입력된 담당자를 삭제합니다.

※ 시공능력 평가 접수 이후에도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이 페이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1차 신고

3. 신인도 등록

1) 우수업체지정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신인도 등록' (New Registration) page on the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website. The page is titled '신인도 등록' and includes a breadcrumb trail: '공사업 > 1차신고 > 신인도 등록'.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순번	지정일자	지정기관명	지정공종	공사명
1	2025-12-15	세종특별자치시	소화설비	세종특별자치시청 증축 소방공사

Below the table, there are input fields for registration details:

- 지정일자*: 2025-12-15 (※ 지정일자가 2025.01.01 - 2025.12.31 일때 가중치 적용)
- 지정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정공종: 소화설비
- 공사명: 세종특별자치시청 증축 소방공사

- ① 업체의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 지정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입니다.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로 지정된 일자, 지정기관명, 지정공종, 공사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소방시설공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더불어 우수업체 지정일자가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만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1차 신고

3. 신인도 등록

2) 품질경영인증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신인도 등록' (New Registration) page on the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website. The '품질경영인증'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tab is selected. The form includes the following fields:

- 우수업체지정: 품질경영인증 (highlighted)
- 평가년도: 2026
- 인증규격: ISO 9001:2015
- 인증일자: 2020.01.01
- 인증기관구분: 국내
- 인증기관명: 한국소방시설협회
- 인증범위: 소방시설공사 (highlighted)
- 인증번호: 소방-0000
- 인증갱신여부: YES
- 경신일자: 2025.01.01
- 인증유효기간: 2025.01.01 - 2025.12.31 (highlighted)

A table below the form shows the following entry:

순번	인증번호	인증규격	인증일자	인증기관구분	인증기관명
1	소방-0000	ISO 9001:2015	2020.01.01	국내	한국소방시설협회

① 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품질경영인증 취득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인증유효기간에 2025년이 포함된 경우에만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 ② 인증규격, 인증일자, 인증기관구분, 인증유효기간, 인증범위, 인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ISO 인증이 갱신되었을 경우 갱신여부 체크, 갱신일자를 입력합니다.
 - 해당업체에서 여러 종류의 ISO인증을 획득하였을 경우 신인도에 반영되는 인증은 1가지입니다. 또한 인증범위에는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에 등록된 품질경영인증이 있는 경우
입력창 하단의 전년도 품질경영인증 복사 를 클릭합니다.

※ ISO 9001만을 입력함(ISO 14000 등은 시공능력 평가에 적용되지 않음)

1차 신고

3. 신인도 등록

3) 환경폐기물 사항 등록

The screenshot shows the '신인도 등록' (New Registration) page on the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website. The '환경폐기물' (Environmental Waste) tab is selected and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page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like '1차신고' and '신인도등록', a main content area with a table for registration details, and a form for inputting information such as '상태구분' (Status), '처리' (Disposal), '발생일자' (Occurrence Date), '고시금액' (Notice Amount), '행정처리기관' (Administrative Agency), '공문서번호' (Official Document Number), '근거' (Basis), and '사유' (Reason).

- ① 업체의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 평가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및 환경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② 증액 요청의 경우 상태구분에서 우수 를,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상태구분에서 불량 을 체크합니다.
- ③ “처분” 항목은 “상태구분” 항목에서 불량부분에 체크할 경우 활성화됩니다.
- ④ 발생일자, 고시금액, 행정처리기관, 공문서번호, 근거, 사유 등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차 신고

3. 신인도 등록

4) 표창사항 등록

- ① 업체의 표창사항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이내에 표창을 받은 경우에만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 ②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표창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발주자별 분류코드에서 공기업 참조 - 67페이지)
- ③ 표창구분, 표창수여일자, 표창수여기관명, 지정공종, 표창수여공사명 등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1차 신고

3. 신인도 등록

5) 행정처분사항 확인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

안내 공사업 방염업 알림마당

공사업

신인도 등록

공사업 > 1차신고 > 신인도 등록

우수업체지정 품질경영인증 환경배기물 표창사항 **행정처분사항**

-평가년도 2026

순번	종류	제재일자	종료일자	과태료	행정처분기관	공문서번호	근거
1	과태료	2025-00-00	2025-00-00	600,000	00소방서	소방-0000	공사업법 제0조

※ 관련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되며, 실적등록내역 확인기간(7월중) 동안에 확인이 가능함

- ① 행정처분사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부도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표시됩니다.
- ② 관련기관(소방본부 등)으로부터 협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되며, 실적등록 내역확인 기간(2026년 7월 중) 동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1차 신고

4. 기술평가 등록

- 보유기술인력 등록사항 확인

기술평가 등록

평가년도: 2026

순번	인력구분	성명	자격종류분1	자격종류분2	(기계)등급	(전기)등급	선임일자
1	주인력	0 0 0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기사(기계)	특급	특급	2025-01-01
2	보조인력	0 0 0	소방기술인정자격		고급	고급	2025-01-01

○ 위 보유기술인력은 시공능력 평가 직전년도 6개월(180일) 이상 업체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선임(해임자 포함)되어 근무하였을 경우 자동 업로드 됩니다.
 ○ 업체에서는 업로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 없는 기술자가 보유기술인력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할 시·도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술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로 신고하여야함 (위반 시 과태료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거짓신고 시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및 과태료(200만원)가 부과

법령개정사항 안내) 시공능력 평가 시 보유기술인력 인정범위 변경
 - 개정조문/시행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제3호나목1 / 2024년 8월 1일
 - 주요내용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시 6개월 이상 선임된 기술자만 보유기술인력으로 인정
 * (개정전) 선임기술자 + 그외인력 → (개정후) 선임기술자

① 2025년 기준(2025. 1. 1. ~ 2025. 12. 31.) 6개월(180일) 이상 업체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선임(해임자 포함)되어 근무하였을 경우 2026. 1. 1. 자동 업로드 됩니다.

② 업체에서는 기술인력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며, 업로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 없는 기술자가 보유기술인력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할 시·도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술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로 신고하여야함 (위반 시 과태료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거짓신고 시 행정처분 (1차:영업정지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3차 등록취소) 및 과태료(200만원)가 부과

1차 신고

5. 실적 등록

1) 실적 등록

공사업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실적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범적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가년도 2026 전문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업명 연계기관

분야가 선택되어있지 않거나 등록된 실적이 없습니다.

공사번호

공사명

도급종류

발주자명 발주자사업자등록번호

발주자분류 계약방법

복합공사여부 YES NO 공사종류

공종세분류 공사지역

계약년월일 차공년월일

완공년월일 차원공기관

총계약금 0 원 전년까지 기성액 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0 원 해당연도계약 0 원

해당연도 기성액 0 원 해당연도 미기성액 0 원

하도급업체 상호 하도급금 0 원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무실적 등록

미기성액 이월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064-702-4201

?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됨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미기성액이월



전체 선택 <input type="checkbox"/>	순번	공사업명	총계약금액	전년도기성액	전년도미기성액	연계기관
<input type="checkbox"/>	1	0000 신축 소방공사	500,000,000	250,000,000	250,000,000	
<input type="checkbox"/>	2	00구청 소방보수공사	2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조달청
<input type="checkbox"/>	3	00아파트 소방공사(신축)	1,000,000,000	500,000,000	500,000,000	
<input type="checkbox"/>	4	00초등학교 신축 소방공사	5,000,000,000	2,500,000,000	2,500,000,000	조달청

※ 조달청(나라장터)으로부터 연계하여 등록된 실적의 경우 미기성액이월을 하지하시고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중등록 등 오류방지)

① 업체가 지난 1년간 기성한 공사실적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실적이 없는 경우 : 등록할 실적이 없는 경우 입력창 하단의 무실적 등록 을 클릭하여 무실적(실적없음) 등록을 합니다.

- ※ **미기성액 이월** : 전년도에 등록된 실적자료 중 미기성 실적이 있는 공사의 경우 하단의 **미기성액 이월** 메뉴를 이용하여 **다른 공사건 등록 전 가장 먼저 등록**합니다.
- ☞ **다른 공사건이 먼저 등록된 경우, ‘미기성액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 ☞ **조달청(나라장터)으로부터 연계하여 등록한 실적의 경우 미기성액이월을 하지마시고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중등록 등 오류방지)**
 - ☞ **전체선택 시 전체 공사건이 선택되고 전체선택을 다시 누르면 전체 선택이 해제되며, 개별선택 및 개별해제도 가능합니다.**
- ② 전년도에서 이월된 공사부터 먼저 입력하며, 당해 연도에 계약된 공사는 계약일자 순으로 입력합니다. 하나의 공사실적을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고, 다른 공사 실적 입력을 원하면, “**추가**”를 눌러 등록합니다.
- ③ 공사번호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④ 공사명 : 계약서 상의 공사명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⑤ 도급종류 : 원도급, 하도급, 자가공사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⑥ 증명서확인자 : 도급종류를 하도급을 선택했을 경우 활성화되며, 발주자 또는 원수급업체 중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곳을 선택합니다.
- ⑦ 발주자명,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⑧ 발주자분류 : 해당 발주자 분류를 부호코드에 따라 선택합니다.
- ※ **발주자분류, 공중세분류, 공사지역, 공사종류 등 세부코드**
 - ‘**발주자별 부호코드**’(67페이지) 참조
- ⑨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중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 ⑩ 원수급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하도급 받은 공사일 경우, 원도급자인 소방시설공사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⑪ 복합공사여부 : 복합공사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YES 를 체크하여 저장하면 새로운 창이 뜨고 여기에 소방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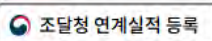
- ⑫ 공사종류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중 하나를 선택하며, 2개 이상 공종을 복합적으로 시공할 경우 공사금액이 큰 주된 공종을 선택합니다.
- ⑬ 공종세분류 : 해당공사의 공종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⑭ 공사지역 및 공사현장 : 공사지역을 선택하면 공사현장이 활성화됩니다. 공사현장 입력란 옆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계약서 상의 공사현장을 입력합니다.
- ⑮ 계약년월, 착공년월, 준공년월 : 계약서 상의 연월일을 입력합니다.
 -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년월, 착공년월은 최초 계약서 상의 연월을 입력하고, 준공년월은 실제 준공년월을 입력합니다.
- ⑯ 착완공기관 : 입력란 옆의  (돋보기) 를 클릭하면 별도의 창이 열리고 지역구분 검색을 통해 해당지역의 소방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한 해당 기관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착완공기관이 119안전센터인 경우, 해당 안전센터가 소속된 소방서를 선택합니다.

⑰ 공사별 금액 입력방법

기재항목	입력 방법
총계약금	계약서 상의 계약총액 ※ 계약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 계약액을 입력
전년까지기성	'24년 까지 기성된 누계기성금액을 입력
전년까지미기성	'24년 까지 미기성 되어 '25년도로 이월된 금액
해당연도계약	당년도('25년)에 계약한 금액 및 당년도에 증감된 계약금액
해당연도기성	'25년도 기성금액(2025년도 발행(세금)계산서)
해당연도미기성	당년도('25년)에 기성되지 않고 이월('26년)된 금액 ※ 전년까지미기성액, 해당연도계약액, 해당연도기성액, 하도급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산출됨
하도급금	하도급을 준 경우 , 하도급 기성금액 입력 ※ 해당연도기성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⑱ 입력하는 모든 금액의 단위는 원으로(천원미만 자동절사)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발주자가 공급한 자재금액이 있는 경우 계약액 및 기성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⑲ 하도급을 준 경우 해당 하도급 업체의 상호, 하도급 금액, 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방법

①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송신된 실적 확인을 위해  버튼을 클릭합니다.

순번	상태	계약번호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년월일	총계약금	해당년도기상액
1	미등록	2025000000	00구경 신축소방공사	00구경	2025-00-00	100,000,000	50,000,000
2	미등록	2025000001	00고등학교 소방공사	00고등학교	2025-00-00	100,000,000	50,000,000

② 상태란의 미등록 실적은 협회 온라인 실적등록이 안된 실적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등록원료를 하여야지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③ 온라인 등록을 원하는 미등록 실적을 더블 클릭합니다.

공사업

진행현황

1차신고

- 실적조사등록
- 신인도등록
- 기술평가등록
- 실적등록

2차신고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 안내

신고현황

실적 등록

실적등록 | 조달청연계내역 |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법적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가년도 2026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공사번호	자동생성	[조달청 연계실적]
1	00구청 신축 소방공사				

공사명 00구청 신축 소방공사

도급종류 원도급

발주자명 00구청 |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분류 | 계약방법 일반경쟁

복합공사여부 YES NO |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종세분류 | 공사지역 선택하세요

계약년월일 2025-00-00 | 작공년월일 2025-00-00

완공년월일 2025-00-00 | 착완공기관

총계약금 100,000,000 원 | 전년까지 기성액

전년까지 미기성액 | 해당연도계약 100,000,000 원

해당연도 기성액 100,000,000 원 | 해당연도 미기성액 0 원

하도급업체 상호 | 하도급금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금액입력방법: 원단위, 예시) 55,555,555원 -> 55,555,000원 자동절사

※ 접수 마감 이후 조달청(수요기관)에서 연계 데이터 삭제 및 실적 변경 등으로 재승인 하였을 경우 협회에 필히 문의 및 조치 요망

진체 증명서출력 |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031-221-4201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됨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④ 조달청(나라장터) 송신된 정보 외 미입력 자료를 입력합니다.

⑤ 자료 입력 후 화면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완료 된 조달청 연계실적은 연계기관란에 “조달청”으로 표기가 됩니다.

공사업

진행현황

1차신고

- 실적조사등록
- 신인도등록
- 기술평가등록
- 실적등록

2차신고

신고서식 출력

실적 등록

실적등록 | 조달청연계내역 |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법적기한 내 2월 17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가년도 2026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공사번호	자동생성
1	00구청 신축 소방공사	조달청		
2	00고등학교 소방공사	조달청		

공사명

도급종류 선택하세요

발주자명 |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 ①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송신된 실적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 등록완료 : 협회 온라인 실적등록이 완료된 실적(실적 인정 ○)
 - 미 등 록 : 협회 온라인 실적등록이 안된 실적(실적 인정 ×)
 - 사용안함 : 협회 온라인 실적등록을 안할 실적(미등록 상태의 경우만 선택 가능)

- ②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실적을 송신하였지만 서면제출 등의 사유로 실적등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 안함 버튼을 눌러 상태를 사용안함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안함으로 상태가 변경된 후 상태 재변경은 불가하며 다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할 시·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서류 접수마감일 이후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연계 데이터 삭제 및 실적변경 등으로 재승인 하였을 경우 협회에 필히 문의 및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협회 등록된 실적은 조달청(나라장터)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공사 유형별 입력방법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실적 등록

실적등록 | 조달청연계내역 |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범직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가년도 2026 | 전문 |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증액)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전체 증명서출력 |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064-702-4201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됨때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사업번호: 2026-007
 공사명: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도급종류: 원도급
 발주자명: 00구청 | 발주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분류: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계약방법 | 일반경쟁
 복합공사여부: YES / NO (NO selected) |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종세분류: 관공서건물(11층) | 공사지역: 세종
 공사현장: 30021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계약년월일: 2025-01-01 | 착공년월일: 2025-02-01
 완공년월일: 2025-10-01 | 착완공기관:
 총계약금: 100,000,000 원 | 전년까지 기성액: 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0 원 | 해당연도계약: 100,000,000 원
 해당연도 기성액: 100,000,000 원 | 해당연도 미기성액: 0 원
 하도급업체 상호: | 하도급금: 0 원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 저장 | 삭제

① “총계약금”, “해당연도계약”, “해당연도기성액”에 해당년도에 기성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② 화면아래의 증명서출력 을 클릭,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공사업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실적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법적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가년도
2026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증액)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공사번호	2026-006		
공사명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도급종류	원도급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명	00구청	발주자분류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복합공사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종세분류	관공서건물(11층)	공사지역	세종
공사현장	3002I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계약년월일	2025-10-24	착공년월일	2025-10-24
완공년월일	2025-10-24	착완공기관	세종시소방본부
총계약금	100,000,000 원	전년까지 기성액	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0 원	해당연도계약	100,000,000 원
해당연도 기성액	50,000,000 원	해당연도 미기성액	50,000,000 원
하도급업체 상호		하도급금	0 원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전체 증명서출력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 064-702-4201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될때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 금액입력방법 : 원단위, 예시) 55,555,555원 -> 55,555,000원 자동결사

※ 접수마감 이후 조달청(수요기관)에서 연계 데이터 삭제 및 실적 변경 등으로 재승인 하였을 경우 협회에 필히 문의 및 조치 요망

추가
저장
삭제

- ① “총계약금”과 “해당연도계약”에는 해당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 ② “해당연도기성액”에는 해당연도에 기성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연도미기성액”에 이월된 금액이 맞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 ③ 화면아래의 증명서출력 을 클릭,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3. 과년도에 계약하여 당년도로 기성액이 이월된 공사

공사업

실적 등록 #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실적 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법적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가년도
2026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중역)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진짜 증명서출력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064-702-4201

?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됨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사번호	2026-005		
공사명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도급종류	원도급		
발주자명	00구청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분류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복합공사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종세분류	관공서건물(11종)	공사지역	세종
공사현장	3002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계약년월일	2024-01-01	착공년월일	2024-02-01
완료년월일	2025-10-01	착한공기관	세종시소방본부
총계약금	100,000,000 원	전년까지 기성액	50,000,00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50,000,000 원	해당연도계약	0 원
해당연도 기성액	50,000,000 원	해당연도 미기성액	0 원
하도급업체 상호		하도급금	0 원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금액입력방법: 원단위, 예시) 55,555,555원 -> 55,555,000원 자동절사
※ 접수마감 이후 조달청(수요기관)에서 연계 데이터 삭제 및 실적변경 등으로 재승인
하였을 경우 협회에 밀히 문의 및 조치 요망

추가
저장
삭제

① “총계약금”에는 해당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전년까지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된 금액을, “전년까지미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되지 못하고 해당연도(2025년)로 이월된 금액을, “해당연도기성액”에는 해당연도(2025년)에 기성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연도미기성액”에 맞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② 화면아래의 증명서출력 을 클릭,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36

4. 과년도에 계약하여 당년도로 이월되고 당년도에 계약변경되어 증액된 공사

공사업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실적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법적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평가년도
2026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공사번호	2026-004		
공사명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증액)공사		
도급종류	원도급	발주자	00구청
발주자명	00구청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분류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복합공사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종세분류	관공서건물(11층)	공사지역	세종
공사현장	3002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계약년월일	2024-01-01	착공년월일	2024-02-01
완공년월일	2025-10-01	착완공기관	세종시소방본부
총계약금	200,000,000 원	전년까지 기성액	50,000,00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50,000,000 원	해당연도계약	100,000,000 원
해당연도 기성액	50,000,000 원	해당연도 미기성액	100,000,000 원
하도급업체 상호		하도급금	0 원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증액)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전체 증명서출력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 064-702-4201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됨때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
저장
삭제

① “총계약금”에는 최종 변경된 계약액을 입력합니다.

② “전년까지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된 금액을, “전년까지미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되지 못하고 해당연도(2025년)로 이월된 금액을, “해당연도계약”에는 해당연도(2025년)에 계약변경된 금액(증액 또는 감액 금액, 감액된 경우 숫자 앞에 마이너스(-)를 붙임)을, “해당연도기성액”에는 해당연도(2025년)에 기성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연도미기성액”에 맞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③ 화면아래의 증명서출력 을 클릭,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5.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업

진행현황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 신인도 등록
- 기술평가 등록
- **실적 등록**

2차신고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 안내

신고현황

실적 등록

실적등록 | 조달청연계내역 |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법적이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반송, 우편)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가년도 2026 - 전문 | |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 1차 신고 등록 | ?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중역)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공사번호: 2026-003

공사명: 다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도급종류: 하도급 | 증명서확인자: 발주자 원수급자

발주자명: 00구청 |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분류: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일반경쟁

원수급업체명: (주)00소방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복합공사여부: YES NO |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종세분류: 관공서건물(11층) | 공사지역: 세종

공사현장: 30021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계약년월일: 2025-01-01 | 착공년월일: 2025-02-01

완공년월일: 2025-10-01 | 착안공기관: 세종시소방본부

총계약금액: 100,000,000 원 | 전년까지 기성액: 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0 원 | 해당연도계약: 100,000,000 원

해당연도 기성액: 100,000,000 원 | 해당연도 미기성액: 0 원

* 금액입력방법: 원단위, 예시) 55,555,555원 > 55,555,000원 자동경사
* 접수마감 이후 조달청(수요기관)에서 연계 데이터 삭제 및 실적 변경 등으로 재송인 하였을 경우 협회에 문의 및 조치 요망

전체 증명서출력 |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전화 연락처: 064-702-4201

|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복합공사 실적내역 등록

순번	공사내용	도급금액	전년도까지기성액	금년도기성액	미기성액
1	전기공사	100,000,000	0	100,000,000	0
2	정보통신공사	100,000,000	0	100,000,000	0

공사내용 *

전년도까지 기성액

도급금액

금년도기성액

0

0

0

0

- ① 도급종류는 하도급으로 선택하여, 발주자명과 원수급업체명을 입력합니다. 증명서 확인자에서 발주자에게 실적증명서 확인을 받을 것인지, 원수급자에게 실적증명서 확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합니다. (원수급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 업체만 입력 가능)
- ② “총계약금액”에는 해당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전년까지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된 금액을, “전년까지미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되지 못하고 해당연도(2025년)로 이월된 금액을, “해당연도기성액”은 해당연도(2025년)에 기성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해당연도미기성액”에 맞게 계산되어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 ③ 복합공사는 소방공사 실적 저장 후 입력합니다. 복합공사여부 입력란 옆의 (돋보기)를 클릭하여 소방공사를 제외한 타공종의 실적을 입력합니다.
- ④ 화면아래의 을 클릭,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6.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업

실적 등록

>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실적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화로 법정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평가년도 2026 -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증액)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공사번호	2026-002		
공사명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도급종류	원도급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명	00구청	발주자분류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복합공사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YES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중세분류	관공서건물(11층)	공사지역	세종
공사현장	3002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행복8길 8	
계약년월일	2025-01-01	착공년월일	2025-02-01
완공년월일	2025-10-01	착안공기관	세종시소방본부
총계약금	100,000,000 원	전년까지 기성액	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0 원	해당연도계약	100,000,000 원
해당연도 기성액	50,000,000 원	해당연도 미기성액	0 원
하도급업체 상호	00소방(주)	하도급액	50,000,000 원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2025-00-00000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전체 증명서출력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064-702-4201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됨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
저장
삭제

복합공사 실적내역 등록

순번	공사내용	도급금액	전년도까지기성액	금년도기성액	미기성액
1	전기공사	100,000,000	0	100,000,000	0
2	정보통신공사	100,000,000	0	100,000,000	0

공사내용 *

전년도까지 기성액

도급금액

금년도기성액

금년도 미기성액

저장

- ① “총계약금”에는 해당공사의 총 계약금액을, “전년까지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된 금액을, “전년까지미기성액”에는 전년(2024년)까지 기성되지 못하고 해당연도(2025년)로 이월된 금액을, “해당연도기성액”에는 하도급금액을 제외한 기성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② “하도급금”에는 하도급 준 금액을 입력하고, 하도급업체 정보(상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두 업체인 경우 이어서 모두 입력(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제외)합니다.
- ③ 복합공사는 소방공사 실적 저장 후 입력합니다. 복합공사여부 입력란 옆의 Q (돋보기)를 클릭하여 소방공사를 제외한 타공종의 실적을 입력합니다.
- ④ 화면아래의 증명서출력 을 클릭,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39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인 경우

공사업

실적 등록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실적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 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법적기한 내 2월 19일에 시공능력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방문, 우편)하여야 점수가 완료됩니다

-평가년도
2026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해연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해연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중액)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공사번호	2026-001		
공사명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도급종류	자가공사		
발주자명	(주)00소방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발주자분류	건설업	계약방법	수의계약
복합공사여부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공사종류	소화설비
공종세분류	사무실빌딩	공사지역	세종
공사현장	3002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계약년월일	2025-01-01	착공년월일	2025-02-01
완공년월일	2025-10-01	착완공기관	세종시소방본부
총계약금	100,000,000 원	전년까지 기성액	0 원
전년까지 미기성액	0 원	해당연도계약	100,000,000 원
해당연도 기성액	100,000,000 원	해당연도 미기성액	0 원
하도급업체 상호		하도급금	0 원
하도급업체 소방등록번호		하도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진체 증명서출력 증명서출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신청인 전자서명 날인하여 증명서 출력가능

조달청 연계실적 등록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064-702-4201

증명서 출력시 [인쇄] 안됨때
 ※ 증명서 출력시 내용이 안나오는 경우 인쇄창을 닫고 실적등록화면에서
 Ctrl+F5 키를 누른 후 출력버튼을 눌러주세요

※ 금액입력방법: 원단위, 예시) 55,555,555원 -> 55,555,000원 자동절사
 ※ 접수마감 이후 조달청(수요기관)에서 연계 데이터 삭제 및 실적 변경 등으로 재승인
 하였을 경우 협회에 필히 문의 및 조치 요망

추가
저장
삭제

① 도급종류에서 자가공사를 선택한 후, “총계약금”과 “해당연도계약”, “해당연도기성액”에 해당년도에 기성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② 화면아래의 증명서출력 을 클릭, 실적증명서를 출력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

공 사 명	구 비 서 류	비 고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공사 발주자가 발행한 <서식4>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2. 개인이나 일반법인이 발주한 공사(일반은행, 사립학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공사 발주자가 발행한 <서식4>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해당공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본 (영세, 면세일 경우 계산서 사본) • 도급계약서 사본 	
3.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공사 감리자가 확인한 <서식4>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4. 해외 소방시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장(해외주재 건설관)이 발행한 <서식4>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 동시 첨부)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문 동시 첨부
5. 군납(국제연합군·외국군)공사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에서 발행한 <서식4>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글번역문 동시 첨부)이 첨부된 거래 외국환은행의 외화 입금증명서 또는 한국군납수출조합장이 발행한 군납 입금증명서 	
6. 발주자 및 원수급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방시설공사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폐업사실 증빙서류 • 해당 공사 감리자가 확인한 <서식4>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다만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서식4>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및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 해당공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본 (영세, 면세일 경우 계산서 사본) • 도급계약서 사본 	

- ※ 1. 하수급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는 원 발주자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원 발주자가 확인을 못할 경우 원도급자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2.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의 내규에 의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내규에 의해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서식4>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발주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부도·폐업 사실 증빙서류는 일간신문, 관련은행, 인터넷 등에 공고된 자료를 말합니다. (금융결제원 등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출력하여 서류제출 시 함께 첨부합니다.)



※ 2026년 실적신고 유의사항

- 실적신고 서류의 제출기한은 2026년 2월 19일까지입니다.
- 제출한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40조)에 의해 **행정처분 (1차 : 영업정지 3개월, 2차 : 영업정지 6개월, 3차 : 등록취소)** 및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시공능력 평가 서류검수시 실적신고 교차검수를 통한 (하)도급 내용의 정확한 입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발주처 확인 또는 착·완공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을 추가로 요청**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소방관서에 통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어 실적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제출서류 신고사례

- 실적증명서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시공규모를 추가하거나 금액, 공사기간 등의 내용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 실적증명서상의 기재내용이 모호하거나 발주자 및 원도급자, 공사현장소재지, 또는 하도급내역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이나 업체규모 및 여건에 비하여 실적신고 금액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 ‘자기수요공사’로서 감리자의 확인이 불명확하거나 실적금액이 과다하게 신고 된 경우
- 군부대공사라는 이유로 발주자, 현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일반사업자(법인 및 개인)가 발주한 공사로서 공사내용이나 금액이 불합리한 경우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중복신고하거나 동일공사에 대하여 공사명 등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일 이전 계약한 소방공사 및 영업정지처분 중에 계약하여 시공한 소방공사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타 공종(건설, 전기, 정보통신 등) 공사실적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1차 신고

5. 실적 등록

2) 실적총괄내역 확인 및 1차신고 등록

공사업

실적 등록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진행현황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 신인도 등록

· 기술평가 등록

· 실적 등록

2차신고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 안내

신고현황

실적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평가년도 2026

업종별	도급별	2025년 계약분(1)			2025년 이월분(과년도 미기성액)(2)			합계(3) [(1) + (2)]		
		계약액(A1)		2025년도 기성액(B1)	이월금액(A2)		2025년도 기성액(B2)	계약액(A1) + 이월금액(A2)		2025년도 기성액(B1+B2)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전문	하도급	1	100,000	100,000	0	0	0	1	100,000	100,000
전문	원도급	4	500,000	300,000	2	100,000	100,000	6	600,000	400,000
전문	소계	5	600,000	400,000	2	100,000	100,000	7	700,000	500,000
합계	하도급	1	100,000	100,000	0	0	0	1	100,000	100,000
합계	원도급	4	500,000	300,000	2	100,000	100,000	6	600,000	400,000
합계	소계	5	600,000	400,000	2	100,000	100,000	7	700,000	500,000

공사업

실적 등록

공사업 > 1차신고 > 실적 등록

진행현황

1차신고

· 실태조사 등록

· 신인도 등록

· 기술평가 등록

· 실적 등록

2차신고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 안내

신고현황

실적등록
조달청연계내역
실적총괄내역

-평가년도 2026

◎ 전문 찾을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검색

실적신고 모두 완료시 1차신고 등록 클릭을 해주세요. 1차신고 등록 ? 실적 입력안내

순번	공사명	연계기관
1	당년도에 계약하여 모두 기성한 공사	
2	당년도에 계약하여 이월된 공사	
3	과년도 계약, 당년도 기성액 이월공사	
4	과년도 계약, 당년이월, 당년 계약변경(증액)공사	
5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받은 복합공사	
6	다른 소방시설공사사업자에게 하도급 준 복합공사	
7	당해연도에 완료된 자가공사	

공사번호 자동생성

공사명

도급종류

발주자명 발주자사업자등록번호

발주자분류 계약방법

복합공사여부 YES NO 공사종류

공종세분류 공사지역

- ① 실적등록에서 입력된 내용을 총괄해서 나타난 화면입니다. 실적총괄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1차신고(실태조사, 신인도, 기술평가, 실적) 등록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실적등록에 있는 1차신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자료를 협회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 1차신고 등록 을 클릭하신 이후에는 실적추가,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서식
출력**

시공능력 평가 신청을 위한 신고서식 출력 및 신청방법 안내

공사업

공사업 > 신고서식 출력

평가년도 2026
※ 공통사항 : 모든 신고서식은 스테이플러(호치키스)를 사용하지 않아주세요
? 서식 출력시 [인쇄] 안됨때
? 신고서식 도움말

순번	서식명	출력	제출기한 (제출처 : 관할 시 · 도회)
1	[서식 1]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서(표지)	출력	2026년 02월 19일 까지
2	[서식 2] 소방시설공사 실적 총괄표	출력	
3	[서식 3] 소방시설공사 실적 신고서	출력	
4	[서식 4] 소방시설공사 실적 증명서 - (8,9와 함께 건별 편철)	출력	
5	[서식 7]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출력	
6	[서식 8] 신인도평가신고서	출력	
7	[서식 9] 소방부문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	출력	
8	계약서 - (건별 편철)	자체양식	
9	세금계산서 - (건별 편철) ※ A4용지 크기로 자르지 않고 제출해주세요	자체양식	
10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포함)	자체양식	

① 시공능력 평가 신청 시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어 해당 서식을 출력하면 됩니다.
- 자체양식의 경우는 해당 업체에서 자체로 준비하시는 서류입니다.

② 출력된 서식의 내용을 확인 후 직인 날인합니다. 직인 날인 된 서류를 건별로 편철합니다. 편철한 서류는 스테이플러(호치키스)를 사용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는 A4사이즈로 자르지 않고 제출바랍니다.

③ **편철된 서류를 2026년 시공능력 평가 제출 기간 마감일인 2026년 2월 19일까지 해당 시·도회로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 및 통상회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1월 2일(금) 09:00시 부터 2월 19일(목) 18:00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1차신고 등록) 후 관할 시·도회로 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회비납부
안내

평가수수료, 통상회비 납부금액 확인 및 납부방법 안내

공사업

회비납부 안내 ▲ 공사업 > 회비납부 안내

진행현황

1차신고 +

2차신고 -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 안내

신고현황 +

○ 평가수수료 안내

구분	금액	소계	납부일자	납부여부
시공능력평가 회비	평가수수료	100,000 원	700,000 원	
	통상회비	600,000 원		
	정화원사 연회비		200,000 원	
	총계		900,000 원	

입금계좌	예금주 : 한국소방시설협회 / 00은행 (0000-000-00000)
영수증출력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수료납부현황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사항 있을 시 협회 담당자와 유선통화 연락처:

통상회비 산정방법	(2025년 소방공사가상실적) 000,000 천원 X 0.6 / 1,000	하한 60만원 상한 3,000만원
--------------	---	-----------------------

- ① 온라인 등록(1차신고 등록)을 완료하시면 회비납부안내에서 납부해야할 평가수수료 및 통상회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합계금액을 확인하고 하단의 해당 시·도회 계좌로 **업체명**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③ **평가수수료 미납 시 시공능력 평가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④ **통상회비 미납 시 협회는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조달청(G2B) 연계를 해드리지 않습니다.(시공능력 평가 공시 이후 통상회비 납부 불가)**

45

2차 신고

1. 재무제표 등록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록

① 업체의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등록합니다.

② 화면우측상단의 **재무제표 입력안내** 를 클릭하면,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각 계정별 과목에 대한 입력은 결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명시된 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④ 손익계산서 중 “4. 판매비와 관리비”는 총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계정을 입력하면 화면에 없는 계정은 “기타”로 자동 계산됩니다.

⑤ 자료입력 후 화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을 합니다. 이후 공사용가명세서, 기술개발투자(해당 업체 한함), 사업통계조사(해당업체 한함)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2차신고제출 기한(법인 : 4월15일, 개인 : 6월10일까지)이 지난 이후에는 등록,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2차 신고

1. 재무제표 등록

2) 공사용가명세서 등록

공사업

공사업 > 2차신고 > 공사용가명세서

평가년도 2026 <'세무대리인 간인 또는 친공' 후 재무제표 원본 제출 >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재료비	<input type="text" value="0"/>	감가상각비	<input type="text" value="0"/>
II. 노무비	<input type="text" value="0"/>	지급입차료	<input type="text" value="0"/>
급여	<input type="text" value="0"/>	수선비	<input type="text" value="0"/>
퇴직급여	<input type="text" value="0"/>	보험료	<input type="text" value="0"/>
기타급여	<input type="text" value="0"/>	사무용품비	<input type="text" value="0"/>
III. 외주비	<input type="text" value="0"/>	소모품비	<input type="text" value="0"/>
IV. 경비	<input type="text" value="0"/>	장비사용료	<input type="text" value="0"/>
복리후생비	<input type="text" value="0"/>	외주공사비	<input type="text" value="0"/>
수도광열비	<input type="text" value="0"/>	기타	<input type="text" value="0"/>
전력비	<input type="text" value="0"/>	V. 공사용가합계	<input type="text" value="0"/>
세금과공과	<input type="text" value="0"/>	VI. 당기공사용가	<input type="text" value="0"/>

※ 금액 입력 방법 : 원단위 까지, 예시) 54,560,949 원 -> 54,560,000 원 자동 절사 됩니다.
 ※ II.노무비, IV.경비 총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계정을 입력하면 화면에 없는 계정은 "기타"로 자동 계산됩니다.

<'세무대리인 간인 또는 친공' 후 재무제표 원본 제출 >
저장

- ① 업체 재무제표의 공사용가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의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등록합니다.
- ② 각 계정별 과목에 대한 입력은 공사용가명세서에 명시된 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 ③ II.노무비, IV.경비 항목에 총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계정을 입력하면 화면에 없는 계정은 "기타"로 자동 계산됩니다.
- ④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공증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 기간에 해당 시·도회로 제출합니다.**
(법인: 4월15일, 개인 : 6월10일 까지)

※ 경영상태등의 자료

○ 재무제표

1. 재무제표는 실적신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가 재무제표 제출마감일 이전 최근 결산일 현재의 정기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까지, 개인의 경우 6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2.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이 확인한 것만 인정하며, 임의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인 업체는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업체도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재무제표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신고서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한 확인자의 성명, 직인, 등록사항 및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재무제표에는 다음의 부속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가. 대차대조표: 유동자산, 유동부채, 자산총계, 부채총계 등
 - 나. 손익계산서: 매출액, 영업이익, 법인세(소득세)차감전순이익 등
 - 다. 공의원가명세서: 원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등

※ 제출(입력 후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은 예비공시기간에 한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누락, 오류, 불명확, 회계사·세무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제출업체에 있음

2차 신고

1. 재무제표 등록

3) 기술개발투자 등록

기술개발투자

공사업 > 2차신고 > 기술개발투자

-평가년도 2026

순번	항목명	회사제시금액 (원)	진단금액 (원)
합계		0	0
1	연구개발	0	0
2	인력개발	0	0

☞ 금액 입력 방법 : 천단위 절사 입력, 예시) 54,560,949 원 > 54,560,000 원

저장

- ① 업체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는 화면입니다.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에 투자한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부문에 실제로 사용한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확인서를 세무명세서와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또는 세무사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소방부문 기술개발투자액으로 인정되는 비용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개정 2025. 2. 28>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p>가. 자체연구개발</p> <p>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p> <p>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p> <p>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p> <p>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p> <p>2) 1)에 해당하는 직원 및 전담요원이 가입한 제30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p> <p>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인사, 급여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p> <p>4)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따른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p> <p>5)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p> <p>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p> <p>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p> <p>나) 국공립연구기관</p> <p>다) 정부출연연구기관</p> <p>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p> <p>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p> <p>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p> <p>사)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p> <p>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p> <p>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p> <p>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p> <p>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한다)에게</p>

구 분	비 용
	<p>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p> <p>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으로 발생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p> <p>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p>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p> <p>사. 중소기업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비용</p>
<p>2. 인력개발</p>	<p>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p>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p> <p>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p>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p> <p>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p> <p>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산업교육기관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해당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을 이수한 대학생을 채용한 경우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 대학생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현장실습 지원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p> <p>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p> <p>차.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p>

2차 신고

2. 사업통계 조사

1) 종사자수/연간급여 및 임금

공사업

진행현황

1차신고 ➔

2차신고 -

재무제표

공사원가명세서

기술개발투자

사업통계조사

신고서식 출력

회비납부안내

신고현황 ➔

사업통계 조사

공사업 > 2차신고 > 사업통계 조사

- 평가년도 2026 ▼

1. 종사자수

(1) 상용 :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정액급여를 받는 종사자
(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조직형태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종사자구분	월평균 종사자수			연간급여 및 임금
	남	여	계	
① 사무 및 기타 종업원 (경영자 포함)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② 기술자 및 기술공 (공사기획, 설계, 감독업무수행자)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③ 기능공 (직접시공업무수행자)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소계 (①+②+③)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업체만 해당)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합계 [(1)+(2)]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2. 연간급여 및 임금

「조사기준년도」 미지급분은 포함하나 전년도 미지급분은 제외

(3) 임시(임시기능공 및 일용근로) ※ 장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 포괄 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현장 근로자	연간 투입연인원			연간급여 및 임금
	남	여	계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 연간투입연인원 : 매일매일 현장에 투입된 총인원을 1년간 합계한 연인원수

(4) 연간 영업월수 ()개월

(5) 납부부가가치세 (매출부가가치세 - 매입부가가치세)

	기업체에서 실제 납부한 납부부가가치세	
① 총 납부부가가치세 (기업체 전체)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② 건설부문 납부부가가치세	<input type="text" value="0"/> (천원)	건설업과 관련하여 실제 납부한 납부부가가치세

부서명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회계사사무소	<input type="text"/>	회계사사무소 전화번호	<input type="text"/>		

※ 통계청 콜센터 : 02-2012-9114 (국번없이110)

저장

※ 소방시설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만 작성합니다. 타 공사업(건축, 전기, 정보통신 등) 겸업업체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통계청에 제출할 일반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으로서, 입력할 해당항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하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 사업통계 조사 입력방법

1. 종사자수

□ 종사자수

- **건설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함(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건설업과 타 산업을 겸업하는 경우 **건설업부문 종사자만을 분리하여** 기입
 - 분리가 불가능할 때는 총매출액과 건설공사매출액의 비율로 배분
- 또한, 원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하도급 업체의 종사자를 원도급업체의 종사자로 포함하면 안됨**
- 상용 및 임시 종사자에는 장기결근자(3개월 이상)와 군복무자를 제외하며 외국인은 국내 공사인 경우는 포함하되 해외 공사인 경우는 제외

□ (1) 상용(상시종사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원

① 사무 및 기타 종업원 ② 기술인(기술자) ③ 기능공

① 사무 및 기타 종업원(경영자 포함)

-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 수위, 승용차의 운전자(건설장비 운전사는 기능공으로 분류) 및 청소원 등을 포함
- 사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단, 무급 비상근 임원은 제외

② 기술인(기술자 / 공사기획, 설계, 감독업무수행자)

- 각종 건설관계 법령 등재 기술인(기술자) 중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또는 학력·경력소지자**

③ 기능공(직접시공업무수행자)

- 1년 이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실제의 취업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액급여를 받는 **현장근로 종사자**, 1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통칭 숙련공**

〈 기술인(기술자), 기능공 구별 기준 예시 〉

자격증 소지자	학경력자	숙련공 현장근로자	비 고
8명	4명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관련 법령상 건설 면허 유지를 위해 4명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만 보유하면 되는 경우

• 기술인(기술자) : 12명 [자격증 소지자 (8명) + 학경력자(4명)]
 • 기능공 : 3명(1년 이상 고용 계약한 경우)
 ※ KISCON의 공사참여자 현황, 조달청 공공 기관발주 공사의 입찰, 계약 자료 등의 행정자료 활용하여 내검의 정확성 제고

□ (2)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 자기 혼자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인기업체는 경영자 모두 자영업자로 조사
 - ※ 법인 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닌 상용종사자로 분류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 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사람

• **조직형태가 개인기업체인 경우** 자영업자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무급가족종사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주의 가족이더라도 상시(常時) 근무에 종사하고, 이에 대한 임금 또는 봉급의 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자는 상용 또는 임시근로자에 포함**

□ (3) 임시 및 일용근로자(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 포함)

- 1년 미만의 고용 계약으로 실제의 취업일수(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잡부, 인부, 단순노무자 등을 포함한 현장근로 종사자

• 상용에 나열된 모든 직종(사무 및 기타종업원, 기술인(기술자), 기능공 등)의 종사자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분류
 • 기능공 중에는 기업체의 상용종사자로 고용되지 않고 일고(日雇)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고로 고용된 기능공은 임시종사자로 분류**
 • **임시 단순건설노무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종사하는 육체적인 단순노무 제공자로서 기능공의 조공, 보통 인부 등 통칭 건설잡부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임시종사자로 분류

□ (4) 연간 영업월수

- 해당 업체가 당해 연도에 실제 영업한 개월 수를 말함

☑ **종사자수 조사요령** (반드시 성별 구분하여 기입)

○ **상용종사자 및 자영업자** ⇒ **월평균 종사자수를 기입**

- **조사 기준년도** 1년 동안 건설업무에 종사한 월평균 종사자수

※ 월평균 종사자수가 소수점 이하일 때는 사사오입

<월평균 종사자 파악 방법>

- 상용종사자 월별 근무인원수
 - 조업기간 5개월인 경우(8월~12월)에 대한 예시
 - 월별 상용종사자수 : **일반적으로 급여 제공일 기준**

구 분	월평균	합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무 및 기타종업원	29	145	22명	30명	28명	40명	25명
기술인(기술자)	25	127	18명	25명	33명	39명	12명
기능공	31	153	27명	30명	32명	34명	30명

- 월평균종사자 : **소수점은 사사오입**
 - 사무 및 기타종업원 ⇒ 29명(145명 ÷ 5개월)
 - 기술인(기술자) ⇒ 25명(127명 ÷ 5개월)
 - 기능공 ⇒ 31명(153명 ÷ 5개월)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연간투입 연인원(연간투입일수)**

- **조사기준년도** 1년 동안 매일매일 현장에 투입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투입일수를 합계한 **총투입일수를 기입**

※ 연인원 :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과 소요된 일수를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환산한 총인원수

<연간투입 연인원(일수) 계산 방법>

- 조업기간 : 5개월(8월~12월)
- 8월의 건설노무자의 연인원 계산 예시
 - **20명은 10일 근무, 15명은 7일 근무, 30명은 9일 근무했을 때**
 - ☞ 20명×10일 + 15명×7일 + 30명×9일 = 575명
- 동일한 방법으로 12월까지 파악하여 모두 합산

구 분	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사자수	1,405명	575명	458명	125명	123명	124명

⇒ **연간투입 연인원 : 1,405명 = 575 + 458 + 125 + 123 + 124**

2. 연간급여 및 임금

- 급여는 공무원가 및 일반관리 부문에서 발생한 제반 급여로서 조사기준 기간 중 정기 또는 부정기를 가리지 않고 근로자에게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모든 급여, 즉 봉급,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생계보조비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로 지급된 것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포함**
- 연간급여액은 업체에서 종사자에게 연간 지급한 급여총액을 기입하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보험료, 적립금 등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그 부담액도 급여액에 가산함(단, 복리후생비는 제외)
 - * 급여총액 : 각종 세금, 기여금, 보험금, 적금, 근로조합비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급여액으로 상여금 등 각종 수당 포함
- 「2025년」 이전에 **체불(滯拂)**되었던 급여를 「2025년」 중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고, 「2025년」에 체불된 급여는 포함하여 조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연계자료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연계자료 확인

○ 협회 연계자료 확인방법

- 1) 이동경로 : 공통 → 조달업체정보 → 경영상태조회
- 2) 화면개요 : 조달업체 자기의 경영상태 등 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 3) 확인 요령
 - ① 자료제공 협회를 선택 합니다.
 - ② 화면상단 오른쪽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 ③ 화면하단에 조달업체의 자기 경영상태/시공여유율, 시공능력평가금액, 시공실적금액 정보가 조회됩니다.
 - ④ 경영상태/시공여유율의 적용일자를 선택하면 해당일자의 경영상태/시공여유율 자료가 조회됩니다.
 - ⑤ 시공실적의 적용일자를 선택하면 해당일자의 시공실적자료가 조회됩니다.
 - ⑥ 시공능력 평가액의 적용일자를 선택하면 해당일자의 시공능력 평가액 자료가 조회됩니다.

※ 연계된 경영상태 등의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입찰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조달청(G2B) Call Center 1588-0800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신청 안내서

V

시공능력 평가 방법

시공능력 평가 방법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로 한다.

$$\text{시공능력 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실적평가액} = \text{연평균공사실적액}$$

-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해당 업체의 수급금액중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 나.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 다.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 라. 공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적은 종전 공사업자의 실적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을 합산한다.
 -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2)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4) 공사업자는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 5) 공사업자가 영 제2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6)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자본금평가액} = (\text{실질자본금} \times \text{실질자본금의 평점} + \text{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times 7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실질 자본금의 규모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2배 이상 3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3배 이상 4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4배 이상 5배 미만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 이상
평점	1.2	1.5	1.8	2.1	2.4

다.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기술력평가액} = \text{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times \text{보유기술인력} \\ + \text{가중치합계} \times 30/100 + \text{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 가중치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의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신규등록·신규양도·합병 후 공사업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양도신고서·합병신고서에 적혀 있는 기술인력자로 한다)만 해당한다.
- 2) 보유기술인력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로 구분하되, 등급구분의 기준은 별표4의2 제3호가목과 같다.
- 3) 보유기술인력의 등급별 가중치는 다음 표와 같다.

보유기술인력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가 중 치	2.5	2	1.5	1

- 4) 보유기술인력 1명이 기계분야 기술과 전기분야 기술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는 3)의 가중치에 0.5를 가산한다.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4. 경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text{경력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times \text{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times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일·양도신고일 또는 합병신고일부터 산정기준일까지로 한다.

나.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과 공사업을 승계한 자의 공사업 경영기간의 합산에 관해서는 제1호마목을 준용한다.

다.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공사업 경영기간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10년 미만
평 점	1.0	1.1	1.2	1.3	1.4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6	1.7	1.8	1.9	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을 합친 금액의 ±1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times \text{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가.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3%)
- 2)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 대통령 표창 (+3%)
 - 그 밖의 표창 (+2%)
- 3)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2%)
- 4)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2%)

나.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아래와 같다.

-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 3) 최근 1년간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2%)
 - 3개월 초과 (-3%)
- 4) 최근 1년간 법 제40조에 따라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 5)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발주자별 부호코드(공종세분류 및 해설)

1. 지역·업종·발주자 부호

○ 지역 업종별 부호코드					
등록업종별 부호			도급계약방법별 부호		
0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1	일반경쟁	
0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2	제한경쟁	
0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3	지명경쟁	
			4	수의계약	
지역별 부호			도급종류별 부호		
11	서울	35	전북		
21	부산	36	전남		
22	대구	37	경북		
23	인천	38	경남		
24	광주	39	제주		
25	대전	40	북한		
26	울산	41	중동		
29	세종	42	아시아		
31	경기	43	유럽		
32	강원	44	아프리카		
33	충북	45	오세아니아		
34	충남	46	아메리카		
			공사세부공종별 부호		
			310	소화설비	
			320	경보설비	
			330	피난구조설비	
			340	소화용수설비	
			350	소화활동설비	
○ 발주자별 부호코드					
정부행정 기관			자치단체		
041	기획재정부	054	법무부	011	서울특별시
042	조달청	055	외교부	021	부산광역시
043	행정안전부	056	통일부	022	대구광역시
044	국방부	057	성평등가족부 (구 여성가족부)	023	인천광역시
045	교육부	0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4	광주광역시
046	문화체육관광부	061	해양수산부	025	대전광역시
047	농림축산식품부	062	중소벤처기업부	026	울산광역시
048	산업통상부 (구 산업통상자원부)	063	국가보훈부	029	세종특별자치시
049	기후에너지환경부 (구 환경부)	089	기타	031	경기도
050	보건복지부			032	강원특별자치도
051	고용노동부			033	충청북도
052	국토교통부			034	충청남도
				035	전북특별자치도
				036	전라남도
				037	경상북도
				038	경상남도
				039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091	공공단체				
092	공기업				
093	주한외국기관				
094	해외				

2. 발주자별 부호코드

○ 정부행정기관

코드	행정기관명	내용
041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세청,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042	조달청	•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 ※ 조달청이 대행 발주한 경우 원발주 기관명으로 분류
043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 시·도, 시·군·구 및 그 소속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분류 (소방서, 자치경찰위원회는 해당 지자체로 분류)
044	국방부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 군부대 제외(기타 089으로 분류)
045	교육부	•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 국립대학교, 국립전문대학 및 기타 국립교육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시·군·구교육청,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 분류하고, 사립학교는 교육서비스업(963)으로 분류
046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047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048	산업통상부 (구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및 그 소속기관
049	기후에너지환경부 (구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 기상청 및 소속기관
050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051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052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및 그 소속기관 (※ 지방국토관리청은 별도 분류)
054	법무부	• 법무부, 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055	외교부	•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그 소속기관
056	통일부	• 통일부 및 그 소속기관
057	성평등가족부 (구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기관
06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및 그 소속기관
061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062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089	기타	• 위의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중앙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입법부, 사법부 등

○ 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각 시·도, 시·군·구

※ 지하철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본부는 092(지방공기업)으로 분류

- 시·도교육청, 구·시·군 교육청, 공립학교

※ 국립대학교 및 부속 초·중·고등학교, 산업대학 등은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045)에 속함

- 소방서 등

※ 중앙소방학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중앙119구조대는 행정안전부(043)에 속함

- 지자체에서 설립한 지방의료원 및 복지관

※ 민간의료원 및 민간복지관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4)에 속함

코드	지역명	내용
0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2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2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2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광주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2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26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1	경기도	경기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3	충청북도	충청북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4	충청남도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5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6	전라남도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7	경상북도	경상북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8	경상남도	경상남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및 공립학교, 소방서

○ 기타

코드	기관	내용
091	공공단체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공공단체에 포함) (3) 농협, 축협, 수협의 경제사업부문, 지도관리부문 ※ 신용사업부문은 민간부문의 금융 및 보험업(959)로 분류
092	공기업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 지방직영기업 : 직접 운영(상·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 지방공사·공단 :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 (지하철, 도시개발, 기타공사, 시설·환경·경륜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설립 - 출연기관 :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
093	주한외국기관	• 주한외국군부대, 주한외국공관 등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 국내에 있는 외국기업체는 민간(900~999)으로 분류
094	해외	• 해외에서 발주한 공사 (☞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공사」: 해외에서 시행되는 공사 ⇒ 해외지역공사)

[참고] 예시

(주무기관) 기관명		
공기업	시장형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준시장형 (18)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3)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주무기관)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분류) 기관명		
지방 공기업	서울특별시 (32)	[광역] 서울특별시상수도, 서울특별시하수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초] 시설관리공단(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광역시 (9)	[광역] 부산광역시상수도, 부산광역시하수도,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기초] 부산남구 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광역시 (7)	[광역] 대구광역시상수도, 대구광역시하수도,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기초]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16)	[광역] 인천광역시상수도, 인천광역시하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기초] 시설관리공단(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광주광역시 (9)	[광역] 광주광역시상수도, 광주광역시하수도,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기초] 시설관리공단(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6)	[광역] 대전광역시상수도, 대전광역시하수도,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8)	[광역] 울산광역시상수도, 울산광역시하수도,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기초] 울산중구 도시관리공단,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 (5)	[광역]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 세종특별자치시하수도, 세종특별자치시공영개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경기도 (107)	[광역] 경기도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기초] 상·하수도(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군포, 광주, 김포, 이천, 구리, 양주, 안성, 포천, 오산, 하남, 의왕, 동두천, 과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공영개발(성남, 안양, 의정부, 시흥, 안성, 의왕),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도시공사(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군포, 광주, 김포, 구리, 양주, 포천, 오산, 하남, 의왕, 과천, 양평), 구리농수산물공사, 시설관리공단(이천, 안성,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파주도시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33)	[광역] 강원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초] 상수도(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하수도(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영개발(강릉, 원주, 춘천), 시설관리공단(원주, 동해, 속초, 영월, 정선, 태백, 평창)
충청북도 (21)	[광역] 충북개발공사, [기초] 상수도(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하수도(청주,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공영개발(충주, 음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분류) 기관명	
충청남도 (37)	[광역] 충청남도개발공사, [기초] 상수도(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하수도(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공영개발(천안, 아산, 계룡), 당진도시공사, 천안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보령, 아산, 부여, 서산)
전북특별자치도 (22)	[광역] 전북개발공사, [기초] 상수도(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하수도(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익산시공영개발, 장수한우지방공사, 전주 시시설관리공단,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전라남도 (22)	[광역] 전남개발공사, [기초] 상·하수도(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공영개발(목포, 순천, 광양),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경상북도 (39)	[광역]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기초] 상수도(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덕, 칠곡, 울진, 예천), 하수도(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영덕, 칠곡, 예천),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시설관리공단(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천, 구미),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상남도 (41)	[광역] 경상남도개발공사, [기초] 상수도(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거창, 합천, 고성), 하수도(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고성), 창원시주택건설, 진주시공영개발,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거창골프장사업소,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창원, 진주, 사천, 양산, 창녕, 밀양, 합천), 창원레포츠파크
제주특별자치도 (6)	[광역] 제주특별자치도상수도,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 제주특별자치도공영버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민간부문

코드	항목	내용
<제조업>		
900	식료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기타 식품 제조업
901	음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콜음료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902	담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제조업
903	섬유제품(의복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적 및 가공사,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90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의복,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편조의복,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05	가죽, 가방 및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906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나무제품,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90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펄프, 종이 및 판지,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90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90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크스 및 연탄, 석유 정제품 제조업(원유 정제처리업,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9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화학물질,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화학섬유,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잉크, 페인트, 세제, 화장품 등)
91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91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13	비금속 광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 및 유리제품,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및 그 제품,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14	1차 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철강,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 주조업
915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제조,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그 외 기타)
91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 통신 및 방송 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마크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91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기기,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918	전기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장치 제조업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구 및 조명장치, 가정용 기기,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코드	항목	내용
919	기타 기계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펌프·압축기, 베어링·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산업용 트럭·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냉각·공기조화·여과·증류 및 가스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 기타)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가공공작기계,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등)
9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업
921	기타 운송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및 보트 건조, 철도장비, 항공기, 및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모터사이클 등)
922	가구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대 및 내장가구, 목재가구, 기타 가구 제조업 (금속 가구, 그 외 기타)
923	기타 제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금속 및 장신용품,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간판 및 광고물, 사무 및 회화용품, 가발·장식용품, 교사용 모형, 그 외)
924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비제조업>		
950	농업, 임업 및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영림업, 벌목업, 임산물 채취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 어로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식물원, 수목원, 휴양림,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활동, 오락목적의 낚시장 및 관련시설 운영 ☞ “965(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51	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금속(철, 비철금속광업), 비금속광물 광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천연생수 및 광천수의 생산 및 포장활동 ☞ “901(음료)”, 구입한 특정 산업용 비금속광물을 분쇄, 마쇄 또는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 ☞ “913(비금속광물제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광산의 개발 및 정지활동 ☞ “954(건설업)”
95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업(발전업, 송전 및 배전업), 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정유공장의 가스 생산활동 ☞ “90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차량용 가스충전소 운영활동 ☞ “955(도매 및 소매업)”
953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업, 하수 및 폐수 처리업, 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폐지, 고철 등 재생용 재료를 수집만 하는 경우 ☞ “955(도매 및 소매업)”
954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건설업(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건설업(지반조성, 교량, 터널, 댐 등 토목시설),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전기 및 통신 공사업업(토목 및 건축관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 건물의 분양대행, 임대 ☞ “960(부동산업)” ☞ 건물을 건설하여 직접 분양은 건설업

코드	항목	내용
955	도매 및 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상품 중개업(산업용 농·축산물, 산·동물,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등) •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음·식료품 및 담배, 생활용품,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건축자재, 철물 및 난방장치, 상품종합, 기타전문도매업 • 종합 소매업(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종합적으로 소매) • 음·식료품 및 담배,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연료, 기타 생활용품,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통신, 배달, 이동 및 방문 판매방법) ※ 배관시설에 의한 가스공급 ☞ “952(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956	운수 및 창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철도, 육상여객, 도로화물, 소화물운송업) • 수상운송업(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 항공운송업(항공여객, 항공화물 운송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 자동차의 수리 ☞ “96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전자 없이 운송장비 임대, 여행관련서비스나 여행보조서비스 ☞ “962(사업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57	숙박 및 음식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업(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 음식점업(일반, 기관구내식당업, 출장 및 이동)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 접객시설 없이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955(도매 및 소매업)”, 장기적인 숙박설비의 임대활동 ☞ “960(부동산업)”
958	정보통신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방송업(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공영우편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출판권없이 각종 서적이거나 정기간행물인쇄, 소프트웨어 및 오디오 기록물 복제 ☞ “908(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959	금융 및 보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은행 및 저축기관, 투자기관, 기타금융업) •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금융지원,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운용리스 ☞ “962(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960	부동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부동산임대, 부동산개발 및 공급)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관리, 부동산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 “954(건설업)”, 단기적인 숙박시설 운영 ☞ “957(숙박 및 음식점업)”
96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업(자연과학 및 공학, 인문 및 사회과학) • 법무관련, 회계 및 세무관련,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회사본부·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수의업, 전문 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그 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코드	항목	내용
96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경비, 경호 및 탐정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운송장비,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무형재산권 임대업 ※ 법률자문, 회계서비스, 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제공활동 ⇨ “961(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동산(주거용 및 비거주용) 관리활동 ⇨ “960(부동산업)”, 조경수 재배 ⇨ “950(농업, 임업 및 어업)”, 건설공사에서 결합 수행되는 조경수 식재활동 ⇨ “954(건설업)”
963	교육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서비스업(국립, 공립 제외), 초등, 중등, 고등 교육기관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일반 교습 학원, 기타 교육기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국립학교 ⇨ “045(교육부)”, 공립학교는 각 지방자치단체(011~039)에 분류
9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거주,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치과 의사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인조치아 및 인체 교정장치의 생산활동 ⇨ “91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수의서비스 활동 ⇨ “961(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농촌체험마을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유원지, 테마파크, 오락장, 수상오락, 갬블링·배팅업) ※ 연극제작 설비 임대 ⇨ “962(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연예인 매니저업 ⇨ “961(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교육 ⇨ “963(교육서비스업)”
96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 종교, 정치 및 시민운동 단체, 기타 협회 및 단체 • 기계 및 장비 수리,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이용·미용업, 욕탕·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세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99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비영업용건물에 대해 발주한 경우 • 여러 공사건을 묶어 발주자를 여러 명 기입한 경우 • 기타 민간부분에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등 ※ 개인이 영업용 건물에 대해 발주한 경우는 해당 업종으로 분류 ※ 행정기관이 발주한 경우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분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업 실적신고(<http://fsale.ekffa.or.kr/>)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 분류되기 쉬운 발주자 분류 예시

-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공사 발주) : 960(부동산업)
 ※ 96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해서는 안 됨
- 개인(개인소유 아파트 보수공사를 발주) : 999(기타)
- 개인(영업용 모텔 공사를 발주) : 957(숙박 및 음식점업)
- 개인(상점에 대한 공사를 발주) : 955(도매 및 소매업)
- 동사무소(경로당 공사를 발주) : 0110~0390(해당 지방자치단체)

3. 공사분야별 부호코드

코드	공사명	분류해설	공사내용
<토목관련>			
210	일반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사설도로, 기타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사설도로, 기타도로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인도, 중앙선분리대, 개설, 증설, 보수공사 포함). ※ 일반도로건설과 분리된 터널, 교량, 고가도로 제외 ※ 일반도로건설과 분리된 조경공사는 별도 분류 ※ 농로공사는 별도 분류(295)
211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용도로 시행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중앙분리대, 중앙선, 개·보수, 인터체인지, 식재 등). ※ 고속도로건설과 분리된 터널, 교량, 고가도로 제외 ※ 고속도로건설과 분리된 조경공사는 별도 분류
212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 (도시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공사(도시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중앙분리대, 개·보수, 화단조성 등) ※ 고속화도로건설과 분리된 터널, 교량, 고가도로 제외 ※ 고속화도로건설과 분리된 조경공사는 별도 분류
220	도로교량	차량, 인도용 교량	일반형교공사, 트러스교공사, 아치교공사, 라멘교공사, 현수교공사, 사장교공사, 연육교 및 연도로공사, P.C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21	철도교량	철도용 교량	철도용으로 시공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일반형교공사, 트러스교공사, 아치교공사, 라멘교공사, 현수교공사, P.C교공사)
230	댐	댐시설(다목적댐에 따른 수력발전소 포함), 취수설비, 하구언공사	용수공급댐공사, 수력발전댐공사(건축공사제외), 홍수조절댐공사, 다목적댐공사, 하구언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발전소용 건물공사는 별도분류(462) ※ 일반적인 수력발전소 설비공사는 별도분류(520)
240	간척	간척공사, 매립공사	• 간척공사 : 수면지나 저습지를 육지로 만드는 간척공사 및 부대되는 공사 • 매립공사 :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여 토지를 조성하는 매립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250	항만	항만, 인공섬 축조, 요트항, 계류시설, 조선시설, 기타항만공사	접안시설, 방파제, 갑문, 선박을 정박하거나 수리를 위한 시설물공사 등 항만관련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항만시설 건축물은 별도분류(470)
251	공항	공항부지조성, 활주로 및 유도로, Gate 및 계류장 설치공사 등	• 공항부지조성공사 : 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이에 부대되는 공사(공항시설 건축물 제외). • 기타 공항관련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공항시설건축물은 별도분류(470)

코드	공사명	분류해설	공사내용
260	도로터널	도로용, 도보용 터널	차량통행용 및 도보용으로 시공되는 터널 공사와 이에 부대(절개 지보수, 식재 등)되는 공사 ※ 도로건설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 도로에 포함하여 분류
261	철도터널	철도용터널	철도용으로 시공되는 터널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고속철도용 터널은 여기에 분류
262	수로 및 기타터널	운하터널, 유수로터널공사	• 운하터널공사 : 수중 및 수상용 터널공사 • 유수로터널공사 : 유류 및 물의 수송을 위한 터널공사
270	일반철도	일반철도, 정차장 및 수리시설공사	선로, 선반 등 철도에 필요한 토목공사와 부대공사. 철도차량 정차, 수리시설과 관련한 토목공사와 부대공사
271	고속철도	고속철도공사	고속화를 위한 고속철도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72	지하철	지하철, 정차장 및 수리시설공사	• 지하철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지하철도차량의 정차 및 수리시설과 관련한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경전철은 여기에 분류
280	택지조성	택지조성 공사	택지(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토목구조물 공사 포함)
281	공업용지조성	공업용지 조성공사	공업용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82	치수, 하천	치수, 하천, 저수지공사	• 치수공사 : 하천보존을 위하여 시행되는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하천공사 : 하천관리를 위한 하수공사, 유수지공사, 제방공사, 신천공사, 하천시설물(수제, 통문, 갑문, 수문 등)설치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 저수지공사 : 하천 및 우수를 모아 저장하는 저수지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농업용 저수지 공사 제외) ※ 농업용저수지 공사는 별도분류(293)
283	치산, 사방	치산, 사방공사	• 치산공사 : 산림보존을 위하여 시행되는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사방공사 : 흩이나 모래 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사방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90	상수도 1천mm이상	상수도 부설공사	직경 1천mm 이상의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91	상수도 1천mm미만	상수도 부설공사	직경 1천mm 미만의 상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292	하수도	하수의 송·배수관공사	하수 송·배수관 설치 및 하수도관련 토목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관거, 맨홀, 사이편시설 등)

코드	공사명	분류해설	공사내용
293	관개수로	농업용저수지 및 시설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관개수로공사와 부대공사 • 농업전용저수지 조성공사와 부대공사
294	정수장	정수장설치공사	정수장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295	농지정리	농업 및 임업정리공사 및 시설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임업정리공사와 부대공사 ※ 농로 공사는 여기에 분류
299	기타토목 시설	위에 분류되지 않은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시설용 토목공사 • 장례 및 묘지 시설을 위한 토목공사 • 옥외 전기·통신공사 • 기타 분류되지 않은 토목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건축관련〉

410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개인용 단독주택과 가정보유시설 • 다중주택 : 건축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하숙집 등과 같이 단독 주택형식의 건축 • 공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단체)의 기관장이 거주하는 공관과 외국공관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립주택 : 1개동의 건축연면적이 660㎡ 초과하는 4층이하의 공동주택 • 다세대주택 : 1개동의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관사, 숙소 포함
411	저층아파트	5층이하	아파트 층수가 5층 이하인 아파트
412	고층아파트	6층~15층이하	아파트 층수가 6~15층 까지 아파트
413	초고층아파트	16층이상	아파트 층수가 16층 이상인 아파트
414	주상복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주거, 상업용 겸용 건물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의 혼합건축물, 주상복합건물)
420	상가, 백화점, 쇼핑센터	상가, 도.소매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 시장 : 도매 및 소매 시장용 건물 (농수산물 시장, 청과물시장) • 백화점 : 백화점 및 유사 건축물 • 쇼핑센터 : 점포, 상가 및 슈퍼마켓
421	사무실빌딩	사무실	금융기관, 사무소, 신문사 등 업무용시설(사옥, 신문사, 공공단체용 건물 , 법무 및 회계사무실 등 일반 사무용건물)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무실은 관공서(430, 431)로 분류
422	오피스텔	오피스텔	오피스텔 및 이와 유사한 건물

코드	공사명	분류해설	공사내용
423	인텔리전트빌딩	인텔리전트빌딩	건물전체가 전산화, 자동화시스템을 이용한 최첨단 건축물로 중앙에서 통제가 가능한 빌딩
430	관공서 건물 (11층이하)	일반근린 공공시설, 특별근린 공공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층 이하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공시설 : 11층 이하인 동사무소, 파출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도서관 등 - 특별공공시설 : 11층 이하인 양·정수장 및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시설물 - 군사시설 : 11층 이하인 군사시설 및 이와 관련한 건축물 - 교정시설 : 11층 이하인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관련 건축물 ※ 전신전화국, 방송국은 별도 분류(490 ; 방송통신시설)
431	관공서 건물 (12층이상)	일반근린 공공시설, 특별근린 공공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층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공시설 : 12층 이상인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 - 특별공공시설 : 12층 이상인 양·정수장 및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공공시설 - 군사시설 : 12층 이상인 군사시설 및 이와 관련한 건축물 - 교정시설 : 12층 이상인 교정시설과 이와 관련 건축물
432	호텔,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 고시원 포함
433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연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원, 연수원, 교육원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화장실, 실습실 등) ※ 유치원, 각종 군사학교, 행정기관소속 학교 포함 (무도학원 490, 운전학원 470 제외)
434	병원	의료시설, 격리병원	• 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정신병원 등 의료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440	교회, 사찰 등 종교용 건물	종교용 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 건축물
441	전통양식건축	전통양식(한옥) 건축	전통양식(한식)의 건축물 및 시설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442	기타문화재 및 유적건물	문화재 시설, 기타유적건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정한 문화재 시설의 복구, 보수 및 설치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450	공연, 집회장소	공연장 시설, 집회시설	극장(야외극장 제외),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강당 등의 시설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

코드	공사명	분류해설	공사내용
451	경기장, 운동장	경기장, 운동장 시설	<p>각종 경기 및 운동경기 관람을 위한 시설물 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p> <p>※ 태권도장, 배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은 여기에 분류</p>
452	전시시설	전시관, 동·식물원	<p>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각종 전시시설, 동·식물원, 수족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p>
460	공장, 작업장용건물	공장건물, 단순작업장	<p>•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수리를 위한 공장 건축물</p> <p>※ 차량 정비공장은 470으로 분류</p> <p>• 기계장치 등이 없는 단순 작업용도의 건축물</p>
461	기계기구설치	기계기구설치	<p>기계기구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시설물</p> <p>※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여기에 분류</p> <p>※ 공장의 플랜트 생산설비는 별도분류(550, 560)</p>
462	변·발전소용 건물	변·발전소용 건물	<p>변전소, 발전소 등의 전력공급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p> <p>※ 발전소 설비공사(플랜트공사)는 별도분류(520)</p>
470	창고, 차고, 터미널 건물	창고, 운수·차고 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p>• 창고 및 하역장 용도의 건물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외 : 480)</p> <p>•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건축물, 항만시설 건축물</p> <p>• 터미널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차고 등의 자동차관련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p> <p>※ 주차장 포함</p>
480	위험물저장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p>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판매소, 유독물판매소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p>
490	기타건축시설	방송·통신,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회복지, 노인거주, 동물관련, 식물관련, 묘지 및 장례관련, 위락, 관광휴게, 청소년, 위생·냉난방, 기타 건축물 공사	<p>• 방송·통신용시설 : 방송국, 전화국, 촬영소 등</p> <p>• 노인복지시설 :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물</p> <p>• 아동복지시설 :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물</p> <p>•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 사회, 근로복지시설 등</p> <p>• 노인거주시설 : 실버타운 등</p> <p>• 동물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등</p> <p>• 식물관련시설 : 화초 및 분재의 온실, 채소 재배시설 등</p> <p>• 묘지 및 장례시설 : 화장장, 납골당, 장례관련 건축물</p> <p>• 위락시설 : 유흥업소, 카지노, 목욕탕 등</p> <p>•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p> <p>• 청소년 시설 : 청소년회관, 학생회관, 심신수련장, 야영장, 자연학습관, 유스호스텔 등</p> <p>• 위생·냉난방용 건물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위생을 위한 시설물</p> <p>• 기타 용도의 건축물 : 마을회관 등</p> <p>※ 무도학원, 음식점 포함(490)</p> <p>※ 동식물원은 별도분류 (452)</p>

코드	공사명	분류해설	공사내용
<산업환경설비>			
511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12	폐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각종 농업, 임업, 공업용 폐수처리를 위한 기기설치 및 각종 부대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13	쓰레기소각장	쓰레기 소각 시설	쓰레기 소각 처리를 위한 기계시설 공사
514	기타환경 시설공사	소음·진동방지시설, 대기환경측정 및 정화시설, 기타환경 시설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방지시설 • 대기환경측정 및 정화시설공사 • 기타 위에 분류되지 않은 환경시설 공사
520	발전소설비공사	수력, 화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소 설비	수력, 화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소 시설을 위한 기계, 기구 등의 설치와 이와 유사한 공사 ※ 변·발전소용 건물 건축공사는 별도분류(462)
530	송유관 및 가스관	송유관, 가스관 시설공사	유류 또는 가스 운반을 위한 송유관·가스관 부설공사 및 관련 플랜트 시설공사와 이와 유사한 공사
540	유류 및 가스 저장시설	유류 및 가스 저장시설공사	유류 및 가스 저장 및 배출 플랜트시설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
550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제철소생산시설, 석유화학 생산시설	제철 생산, 석유화학 생산을 위한 플랜트공사(기계설비) ☞ 석유, 화학, 제철, 제강, 제련 공장은 여기에 해당 ※ 플랜트(Plant): 발전소, 정유공장 등과 같이 전력, 석유, 가스, 담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공급하는 공장을 짓는 산업으로 특수한 목적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기계설계에 따른 건축설계)
560	기타플랜트 설비공사	위에 분류되지 않은 플랜트설치공사 등	각종 제조등 공장시설의 기계설치 공사 및 이에 부대되는 공사 (펄프, 제지, 시멘트, 유리 공장 등)
<조경공사>			
610	수목원	식재, 녹화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및 환경조성을 위한 수목식재, 이식 및 보호 유지공사 * 미세먼지숲조성 포함 • 지표면 녹화를 위한 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
611	공원조성공사	공원편의시설, 분수대 및 인공연못 설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유원지내의 벤치 및 음료수대,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의 편의, 위락 시설공사 • 공원, 유원지내의 분수대 및 인공연못 설치공사 ※ 공원, 유원지 공사는 기타건축시설(490)으로 분류
620	기타조경시설	기타조경시설 공사	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조경시설 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 ※ 도로공사와 분리되지 않는 조경공사는 해당도로공사로 별도분류

4. 공사 세부공종별 부호코드

코드	공종	내용
310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320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30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340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저·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350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 콜센터 : 02-2012-9114

자주하는 질문(Q&A)

가. 시공능력 평가 관련

1. **Q** 실적신고접수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2026년 시공능력 평가 실적신고의 접수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 재무제표는 법인업체인 경우 4월 15일까지, 개인업체인 경우 6월 10일까지입니다.

2. **Q** 실적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실적신고는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셔야 하며, 입력사항은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해당 시·도회로 제출하셔야 해당년도 평가를 접수하는 것으로 봅니다.

3. **Q** 실적서류는 등기로, 통상회비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접수확인이나 통상회비 납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접수 확인 : 홈페이지 업체 로그인 후 공사업 실적신고 → 진행현황
수수료 확인 : 홈페이지 업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수수료 납부현황

4. **Q**관급공사는 어떤 공사를 의미하나요?

A 관급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 사립학교는 교육서비스업(963)으로 분류)

5. **Q**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 공사의 기성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서식4>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경우 발주처 혹은 원도급 업체의 확인은 생략가능합니다.

6. **Q**세금계산서는 해당연도에 발행한 것만 인정이 되나요?

A 네.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2025년에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를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7. **Q**발주자나 원수급자가 부도·폐업이 되었을 경우 실적확인을 어떻게 받나요?

A ① 발주자 혹은 원수급자의 부도·폐업사실 증빙서류(국세청이나 금융결제원에서 사실을 확인하여 출력한 서류 또는 일간신문, 관련은행, 인터넷에 공고된 자료 포함)와 ② 당해 공사 감리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또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행한 당해 공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③ 도급계약서, ④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8. **Q** 소방공사가 전기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등의 타 공사와 같이 이루어 졌을 경우 실적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서식4>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상에 4. 복합공종(타공종 포함) 실적 내용을 기재하여 발주처 혹은 원도급 업체의 확인을 받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9. **Q** 기성액등 금액 입력시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실적신고시 입력하는 금액단위는 원단위이며(천원미만 절사), 소방공사 실적은 반드시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기재)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또한 원단위(천원미만 절사)로 입력합니다.

ex) 1,234,120원 → 1,234,000원

10. **Q** 기술자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2025년 기준(25. 1. 1. ~ 25. 12. 31.) 6개월(180일) 이상 업체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으로 선임(해임자 포함)되어 근무하였을 경우 2026. 1. 1. 자동 업로드 됩니다. 업체에서는 기술인력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며, 업로드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 없는 기술자가 보유기술인력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반드시 관할 시·도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술인력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협회로 신고하여야함(위반 시 과태료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제40조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 거짓신고 시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및 과태료(200만원)가 부과


11. **Q** 하도급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 줄 수 있나요?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에 “소방시설공사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2. **Q**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를 실적신고와 같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재무제표와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와 증빙서류(세무대리인의 날인이 들어간 세부명세서 및 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증 사본)를 재무제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3.  소방시설공사업을 다른 업체로 넘길 경우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자의 공사실적과 영위기간이 양수자에게 승계되며, **협회에 지위승계 신고 및 신고가 처리된 때에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소방시설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 나. 개인이 경영하던 소방시설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
- 다.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인 법인과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 마.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 중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바. 법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14.  온라인 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하던 중 “[당년도계약] 항목은 필수사항입니다” 라는 문구가 계속 뜹니다.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비어있을 경우 뜨는 메시지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0”을 입력하시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15.  통상회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회비 미납 시 협회는 시공능력 평가에 대한 조달청(G2B) 연계를 해드리지 않습니다.(시공능력 평가 공시 이후 통상회비 납부 불가)

나. 증명 발급 관련

1. **Q**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 않으면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포함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현재 협회에서 공사업체에게 발행되는 시공능력확인서 외 9종의 증명서는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고 시공능력 평가액이 공시가 된 업체에 한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소방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를 받지않더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Q** 단일실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단일실적증명서의 경우 가까운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 방문 및 온라인(정회원사)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단일실적증명서 역시 해당 공사에 대한 실적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3. **Q** 행정처분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행정처분 확인서는 관할 소방관서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 방문 또는 온라인(정회원사)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Q** 실적확인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홈페이지 업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업체정보**에서 시공능력 평가액 조회 및 경영상태, 실적 현황, 보유기술자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 정회원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 회원 가입 관련

1. **Q** 한국소방시설협회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원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입회비(5백만원)과 함께 관할 시·도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회 원서는 협회 홈페이지 ⇨ 회원사서비스 ⇨ 회원사가입안내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정회원사의 주요서비스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회비 인상안내 : 300만원 ⇒ 500만원(2025. 1. 1. 시행)

한국소방시설협회 주요 회원서비스

구 분	내 용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맞춤형 입찰정보(메일링) 서비스 상시 제공 • 회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증명서 발주자 직인 생략 금액 상한 조정(기존 500만원 > 1,000만원) - 설계·감리 분리도급 입법 추진 • 법령 제·개정 정보 등 주요 현안사항 알림 • 소방방재신문 구독료 할인 • 각종 간행물 제작 및 지급(회원명부, 소방누리, 다이어리, 달력 등)
교육 및 장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 교육 시행 및 안내서 배포 • 서울 중심 교육 훈련장 및 세종 훈련장 신규 운영(확보) • 업무제휴·협약체결을 통한 회원사 임직원 등록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관 : 송실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최대 40%) -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최대 30%) • 회원사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
경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노무, 재무·회계, 경리업무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자문) 변호사 운영 및 전문업체와 MOU체결, 상담·자문료 할인 및 기장대행·세무조정료 할인 등 • 회원명부 회원정보 등재로 회원 홍보 강화(매년 9월 제작·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방염업 : 시공·방염처리능력평가액 포함 업체 상세정보 - 설계·감리업 : 업종 보유현황, 등록번호, 연락처 등 상세정보 • 신규 회원 홈페이지 배너광고 3개월 무료 게재 • 소방업무 전산화 서비스 요금제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공인인증서 발급·공공입찰용 및 민간협력사용 신용평가수수료 20% 할인
기타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증 및 회원가입 기념품 제공 • 정부기관 등 표창 및 각종 심의·자문위원 우선 추천 • 온·오프라인 제증명 무료발급 및 할인(설계·감리업 용역실적) •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 연중 회원사 단합 행사 참여(회원사의 날 등) • 시설 보안서비스(ADT캡스) 및 소프트웨어 등 이용료 할인 • 제주 한림리조트 등 소방산업공제조합 복지시설 이용료 할인
회원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할 수 있음 • 협회의 제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www.ekffa.or.kr) > 회원사 서비스 > 업무제휴서비스

한국소방시설협회 각 시·도회 주소록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서울시회	우편번호 : 07070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24(신대방동 692-9) 2층	T : (02)846-6090~6 F : (02)846-6088
부산시회	우편번호 : 4752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70, 405호 (거제동, 종근당빌딩)	T : (051)897-4201 F : (051)898-4301
대구경북도회	우편번호 :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3층 (입석동, KT동촌빌딩)	T : (053)742-4202 F : (053)743-4301
인천시회	우편번호 : 21435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67, 3층 (십정동, 정석빌딩)	T : (032)467-4201 F : (032)467-4301
광주전남도회	우편번호 :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9층 (금남로5가, ㈜아모레퍼시픽)	T : (062)528-4201 F : (062)528-4301
대전세종충남도회	우편번호 : 3002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8, 1층	T : (044)860-6891~3 F : (044)860-6899
울산시회	우편번호 : 44776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6, 502호 (두왕동, 조선해양하이테크타운)	T : (052)258-4201 F : (052)227-4201
경기남부도회	우편번호 : 162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3로4번길 57, 1층 (이의동, 전기공사공제조합 B/D)	T : (031)221-4201 F : (031)221-4301
경기북부도회	우편번호 : 11655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74, 3층 (의정부동, KT의정부빌딩 사무동)	T : (031)877-4201 F : (031)836-4301
강원도회	우편번호 : 2436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춘로5번길 23, 3층 (퇴계동, KT&G강원본부)	T : (033)251-4201 F : (033)256-4301
충북도회	우편번호 : 2839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 5층 (가경동, KT가경지사)	T : (043)276-4201 F : (043)276-4301
전북도회	우편번호 : 5486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8, 204호(만성동, 효정빌딩)	T : (063)277-4201 F : (063)277-4301
경남도회	우편번호 : 5143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61, 701호 (용호동, 경남빌딩)	T : (055)287-4201 F : (055)287-4301
제주도회	우편번호 : 631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3층(이도일동, KAL 빌딩)	T : (064)702-4201 F : (064)702-4301

※ 주) T : 전화, F : 팩스

2026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 신청 안내서

발 행 일 2025년 12월

인 쇄 일 2025년 12월

펴 낸 이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박현석

펴 낸 곳 한국소방시설협회 평가사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복8길 8

TEL : 044-860-6771 FAX : 044-860-6769

<http://www.ekffa.or.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정 가 5,000원



한국소방시설협회
Korea Fire Facility Association